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2022. 11

한국전력기술
KOPCO ENGINEERING & CONSTRUCTION

목 차

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 1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개요 ····· 1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2

Ⅱ. 공정거래법의 이해 및 사건처리 절차 ····· 4

1.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 ····· 4

2. 공정거래법 개요 ····· 4

3.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 5

4.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5

5.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 9

6.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 11

Ⅲ. 하도급에 대한 이해 및 업무시 유의사항 ····· 14

1. 하도급법의 이해 ····· 14

2. 적용대상 ····· 20

3. 위반시 제재 ····· 23

4. 회사가 원사업자인 경우 하도급법상 유의사항 ····· 26

5. 회사가 발주자인 경우 유의사항 ····· 35

6. 업무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38

Ⅳ.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 42

1. 거래상 지위남용의 개요 및 유형 ····· 42

1) 개념 ····· 42

2) 판단기준 ····· 43
3) 유형 ····· 43
· 구입강제 ····· 43
· 이익제공강요 ····· 44
· 판매목표강제 ····· 45
· 불이익제공 ····· 46
· 경영간섭 ····· 48
2. 위반시 제재 ····· 50
3. 업무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51

Ⅴ. 고객, 임차인, 협력업체에 대한 약관법 준수 ····· 54
1. 약관법의 이해 ····· 54
2. 약관의 불공정성(위법성) 판단기준 ····· 56
3. 약관법의 주요 규제 내용 ····· 56
4. 위반시 제재 ····· 66
5. 업무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67

Ⅵ.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준수 ····· 68
1. 청탁금지법의 이해 ····· 68
2. 적용대상 및 범위 ····· 69
3. 위반시 제재 ····· 70
4. 업무시 유의사항 ····· 70
5. FAQ(사례) ····· 75

[부록]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리스트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회사는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미래 글로벌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회사를 둘러싼 공정거래환경에 대응하여
법 위반 등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준법 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공정문화
확립에 모범적인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우리 임직원들의 준법 및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위반 사전예방, 공정문화 확산 및
내재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한국전력기술의 공정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규정과 자율준수 편람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문화가 확고한 기업문화로 정착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포함하여 준법 시스템 운용 전반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 및 다양한 준법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임직원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기술 사장 김시호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조직

구분	명칭	담당	내용
운영	자율준수관리자	법무실장	· 자율준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및 조사 ·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 윤리경영 위반자 인사위원회 상정 요청 ·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주관부서 (CP 담당부서)	법무실 윤리준법팀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총괄 전담부서 · 자율준수 운영규정, 편람 제작 및 보완 · CP 교육 운영 및 관리 · CP 운영상황 모니터링 및 보고
	각 부서별 자율준수 담당자	계약부서, 사업행정 등	·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업부서 자율준수여부 점검 ·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시행 · 공정거래 관련 정보 사내 전파
내부지원/ 신고시스템	자문 등 지원채널	법무실	· 공정거래 법령 관련 자문 의뢰 시 법률자문 시행
	익명 제보 시스템 (레드휘슬 등)		· 임직원, 협력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의 익명 제보 시스템 · 불공정거래 행위, 인사비리, 성범죄, 갑질행위, 금품 등 비위, 기타 비윤리적 행위 신고 및 감시

[공정거래 관련 문의 및 신고]

□ 한국전력기술 법무실 윤리준법팀 (☎ 054-421-3967)
□ 익명 제보 시스템은 한국전력기술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고센터 이용

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해

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개요

□ **의의**

○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회사가 도입, 시행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말하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 **목적과 취지**

○ **기업의 법위반 손실 방지 및 이미지 제고**

- 기업은 법 위반행위가 적발 될 경우 회사는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실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형· 무형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 특히,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3배 손해배상제도(공정거래법 등 해당 법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담) 도입 등 제재 수준이 강화되고 법 집행 기관의 확대로 인해 CP를 주축으로 한 준법 경영의 중요성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 CP의 성공적인 운영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 수준도 향상시켜 기업 재무구조 개선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 특히 미국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 CP 운영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Global Business 중심의 기업 및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CP 운영이 기업가치 향상에 매우 효과적인 계기이자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CP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경우 투명경영, 공정경영 실천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제고할 수 있다.

○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 CP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내 모든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 및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내재화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 다양한 Business Partner에게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조성의 필요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므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정거래 문화를 확립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가 제안하는 모범거래모델에 포함된 CP의 도입과 운영이 정부의 경영평가시 준법경영의 실천 의지를 나타내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 또한 회사는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다양한 협력업체들과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정부의 효율적인 행정력 활용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여**

- 기업의 적극적인 CP 운영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의 법 집행 입장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CP 운영을 통해 기업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업 환경을 감안하여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 이러한 노력 덕분에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사후적 제재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렇게 축적된 행정력을 다시 활용하여 더 나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게 된다.

□ **적용 대상**

ㅇ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의 목적은 회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ㅇ 특히, 본 자율준수프로그램 편람은 공정거래 및 반부패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행동규범의 세부지침으로 활용된다.

□ **관련 용어**

ㅇ "회사"란 별도의 표시 또는 언급이 없는 경우 "한국전력기술"을 말한다.

ㅇ "임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ㅇ "협력업체" 또는 "거래 업체"란 회사와 계약관계가 체결된 협력업체, 공급업체를 말한다.

ㅇ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ㅇ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ㅇ "약관법"이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ㅇ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ㅇ "청탁금지법"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ㅇ "공정거래 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한다.

ㅇ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임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ㅇ "CP"라 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규정

□ **CP 구성**

ㅇ **CP 규정이란**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의 취지에 따라 회사에서 제정한 내부 규정을 말한다.

ㅇ **CP 8대 구성 요소**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회사는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CP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작성과 보관은 필수 요소로 등급평가 시 CP 구축 및 모니터링 관련 자료, 공정위 보고자료, 경쟁법적 문제행위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요구되므로 회사의 문서정책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회사 내 공정거래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천명과 관심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사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경영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이며 전 직원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자율준수 의지는 인트라넷, 전자메일 등을 통해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으며 모든 직원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인식시켜야 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를 지정(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용의 중심으로 CP 운용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게 된다. 자율준수관리자가 선임 되면 이러한 사실을 서면, 전자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4)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준수편람(Compliance Manual)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부서에 배포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편람은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및 사례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기업의 사업내용 변화, 공정거래 관련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라넷 등을 활용,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 임직원들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교육 실시

- 임직원 대상으로「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특히 CP기준과 절차 및 공정거래관련 법규 준수 사항 등에 대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또는 임직원들의 직책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CP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6) 법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공정거래와 관련된 각 부서는 체크리스트 자가점검 등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실효적으로 자율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관부서는 관련부서의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도와 현업 단위의 리스크를 검토하여 위법 행위가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합리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마련해야 한다.
- 내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여 제재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가 없으며 공정위 또한 이를 경쟁법 집행을 위한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회사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CP 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ㅇ 자율준수관리자란?

- 사장은 CP를 효과적으로 구축 및 운영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지위와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 자율준수관리자는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주관부서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자동 승계한다.
- 다만, 주관부서장이 공석이거나, 주관부서장의 업무와 자율준수관리자로서의 직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ㅇ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총괄

2. 자율준수 관련 교육 총괄
3. 자율준수 관련 모니터링 총괄
4. 자율준수편람 관련 총괄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한 대응조치 요구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유관부서 통지
7. 기타 CP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II. 공정거래법의 이해 및 사건처리 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률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ㅇ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은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제정된 13가지의 법률이 있다.

[공정거래법 소관 법령]

NO	법령	회사가 적용받는 법률
1	공정거래법[1]	○
2	하도급법[2]	○
3	약관법[3]	○
4	표시·광고법	×
5	할부거래법	×
6	방문판매법	×
7	전자상거래법	×
8	대규모유통업법	×
9	가맹사업법	×
10	대리점법	×
11	소비자기본법	×
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
13	제조물책임법	×

2.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요

□ **목적**

ㅇ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ㅇ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1)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 중 협력사와 계약체결, 이행, 완료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등)
2) 회사가 건설 또는 용역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에 위탁 시 하도급법 적용 가능
3) 회사와 협력사와의 표준계약서 조항 및 임차인간의 임차 기본 계약서상에 불이익한 조항이 삽입된 경우

□ **구조**

ㅇ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양질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익은 증대되는데,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이기에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시장경제, 거래행태)이 중요하다.

ㅇ "시장구조"란 일정한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 수가 얼마나 되는 지와 각 참여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독점(monopoly)이란 시장 내의 사업자가 하나이고 그 점유율이 100%란 뜻이고, 과점(oligopoly)란 시장 내의 사업자가 소수(예: 3 또는 5)이고, 그 사업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경쟁이 없거나 치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ㅇ "거래행태"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행태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담합(collusion)을 할 경우에는 시장 내의 사업자가 여럿이 있더라도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정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소비자에게 혹은 경제 전체에 생기게 된다.

ㅇ 담합행위 이외에, 일반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배제행위' 와 '약탈적 가격설정행위' 가 있다.

□ **규제 유형**

시장구조의 개선	거래행태의 개선
□ 경제규제 완화 및 경쟁제한제도개선 □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금지 □ 경제력집중억제 ㅇ 상호출자금지 ㅇ 채무보증의 금지 및 보증 해소 ㅇ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ㅇ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ㅇ 가격을 결정·유지·변경 ㅇ 거래조건·대금지급조건결정 ㅇ 생산·출고·거래 등의 제한 □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3.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 **적용대상(사업자)**

ㅇ 「공정거래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ㅇ 사업자는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이다(「공정거래법」 제2조 제1항). 판례는 사업자를 자기의 계산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과 관련된 각종 결정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 **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여부**

ㅇ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경제주체의 하나로서 타인과 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그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된다. (대법원(90다카3659))

[회사의 공정거래 및 하도급 리스크]

□ 회사는 독·과점적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공사계약, 물품 구매, 용역발주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때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회사는 설계·기술용역 및 건축·토목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또한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협력사)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경우 계약체결 시 사전에 정해진 계약규정이 거래상대방(협력사, 임차인, 고객)에게 불이익한 조항이 삽입된 경우 공정거래법 또는 약관법을 위반할 수 있다.

4. 공정위의 기능과 역할

□ 공정위

ㅇ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건에 대해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위원들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ㅇ 공정위는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9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와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위원 3인으로 구성되는 소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 심판기능으로서의 공정위

구분	전원회의	소회의
의장	ㅇ 위원장	ㅇ 상임위원
의결정족수	ㅇ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①항)	ㅇ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 (「공정거래법」 제37조의2, 제42조 제②항)
소관사항	ㅇ 법규 등의 제·개정 ㅇ 이의신청의 재결 ㅇ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건 ㅇ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사건 (「공정거래법」 제37조의 3)	ㅇ 일반사건 ㅇ 승인·인정·인가사항 ㅇ 집행정지의 결정 ㅇ 과태료 ㅇ 관계기관에 협조의뢰 사항 (고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약관법」상 시정요청)

ㅇ 심결

- 공정위가 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는 일련의 심판과정을 일컫는다.

ㅇ 심사관

-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인지된 내용에 대해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 후에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해 인지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이러한 심사관은 공정위 소속 4급 이상인 직원 중에서 사무처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되고, 일반적으로 국장과 지방사무소장이 심사관이 된다.
- 물론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공정위가 행하게 된다.

ㅇ 피심인

-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당해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ㅇ 이의신청인

- 공정위의 처분을 받은 피심인이 당해 처분에 불복하고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하는 자를 말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

ㅇ 공정위 심판의 합의 시 "위법성 인정"에 대한 합의 후, '시정조치', '과징금부과',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형사고발' 등의 "제재수단의 종류와 수준"에 대한 합의를 한다.

ㅇ 제재 조치 종류

구분		법 위반 시 조치	
경쟁정책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금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 손해배상책임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피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에 청구 가능
	기업결합심사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 당해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기타 법위반상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정조치 ·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1일당 일정금액(최대 결합금액의 0.03%) 범위내에서 부과 ·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시 사업자는 1억원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부당내부거래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부당지원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구분		법 위반 시 조치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부당공동행위 (담함)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당해 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관련 상품·용역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 · 매출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또한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
	불공정 거래행위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부과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의 3년간 평균매출액에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과
		벌칙	· 공정위의 고발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시정조치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기업거래 정책	하도급거래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원사업자 및 발주자에 대하여 대금 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 명령, 시정명령 공표명령 · 원사업자, 발주자 및 수급사업자에게 관련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벌칙	· 하도급대금 2배 상당금액 이하의 벌금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구분		법 위반 시 조치	
			· 3억원 이하의 벌금 - 보복조치금지 위반자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경영간섭, 탈법행위금지 위반자

5.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

[사건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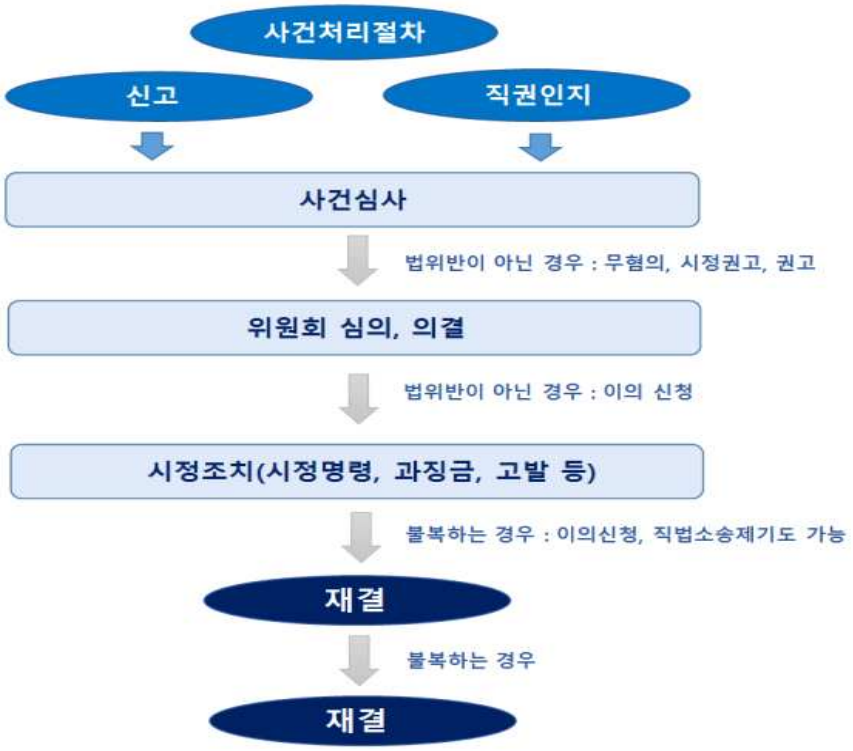

□ **인지단계**

- ㅇ 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신고에 의한 조사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49조).
- ㅇ 위반혐의는 직권인지가 원칙이고, 신고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한다.
- ㅇ 신고 접수시 예비조사 실시 후 사건화 여부를 결정한다.

□ **조사•심사 단계**

- ㅇ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 ㅇ 조사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조치의견을 제시한다.
- ㅇ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은 후, 위원회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 상정한다.

□ **심의•의결 단계**

ㅇ 사건심사 착수보고(사건번호, 사건명부여) 후 조사권을 발동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ㅇ 심의는 위원회가 피심인과 심사관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대심 구조하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피심인 등에 대한 본인확인, 심사관의 심사보고, 피심인의 의견진술, 심사관의 의견진술, 위원들 질문 및 사실관계 확인, 참고인 등의 심의참가, 심사관의 조치의견 발표, 피심인의 최후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ㅇ 합의는 심의가 종료된 후 위원들만 참석하여 비공개로 위법여부, 조치내용 등에 대해 논의·합의하는 과정이다(「공정거래법」 제43조).

□ **의결 결과 통지**

ㅇ 합의 결과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여 당해 심사관이 의결서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로 이로써 피심인의 의무가 발생하거나 권리행사가 제한된다(「공정거래법」 제45조).

□ **공정위의 조치 유형**

ㅇ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조치할 수 있는 유형으로 재심사명령, 심의절차종료, 무혐의, 종결처리, 조사 등 중지,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고발 등이 있다.

□ **공정한 심결을 위한 주요 제도**

① 심의준비 절차제도

ㅇ 정식심의에 앞서 심사관과 피심인간에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서면 등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실관계와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② 심의 속개제

ㅇ 심의를 신중하게 하고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심의를 한번에 끝내지 않고 다음 기일에 심의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③ 심의분리제

ㅇ 공동행위와 같은 위반행위 건에 대한 심의시 특정 피심인이 다른 피심인과 별도로 심의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기업의 영업상 비밀이 경쟁사에 공개될 우려가 있거나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심의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제도이다.

④ 출석 시차제

ㅇ 해당 안건의 심의시작 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의시작 시간까지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는 불편 등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당 안건의 심의시간을 예측하여 그 시간에 맞도록 출석하도록 하여 피심인들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ㅇ 기타 사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공개, 프리젠테이션 시설의 설치·운영, 외국인들의 심의 참가시 편의제공을 위한 통역부스 설치 허용 등 다양한 심결절차 응용이다.

□ **불복절차**

①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 ㅇ 공정위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제기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을 하고 30일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53조).
- ㅇ 시정조치 명령을 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53조의2).

② 행정소송

- ㅇ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공정거래법」 제54조, 제55조).
- ㅇ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 **사전 심사 청구 제도**

- ㅇ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거래관계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하여 그 적법 여부를 30일 이내에 회답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 ㅇ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의견이므로 적법하다고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확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 ㅇ 다만, 구체성이 없는 경우 자료부족으로 법 위반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앞으로 실시하기로 확정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심사가 가능하다.

□ **동의명령제도**

- ㅇ 동의명령제도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서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 ㅇ 동의명령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은 법 위반 판정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시정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사업상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하고 불공정기업 판정으로 인한 이미지 훼손을 막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 공정위 역시 법 집행의 효과를 통상적인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구현하면서도 피규제자의 동의를 얻어 냄으로써 법 집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 등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 ㅇ 소비자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통상의 시정조치에는 포함되기 어려운 가격 인하, 손해보상 등 보다 직접적이고 다양한 시정 수단을 통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6.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 **개요**

- ㅇ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유통어법 거래, 약관분쟁, 대리점 분쟁등의 조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주요 분쟁조정 안내**

① 공정거래 분쟁조정

(가)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ㅇ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공정거래조정원은 2008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ㅇ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위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조정의 대상

ㅇ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대상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 중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로서, ① 단독의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경쟁사업자 배제, ④ 부당한 고객유인, ⑤ 거래강제,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 ⑦ 구속조건부거래,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ㅇ 불공정거래행위 중 조정신청 제외 대상 다음 행위는 행위의 내용·성격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에서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부당한 지원 행위
- 공동의 거래거절 행위
-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행위
- 집단적 차별 행위
- 계속적 부당 염매로 인한 경쟁사업자 배제 행위

② 약관분쟁조정

(가) 약관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이유

ㅇ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불공정약관으로 발생한 사업자와 고객(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 제외)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공정거래조정원은 2012년부터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약관분쟁조정협의회 구성

ㅇ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는 교수, 법조인 등 약관규제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공정위 위원장이 위촉하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 조정의 대상

ㅇ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제한하는 등 약관의 내용이 「약관규제법」 제17조를 위반한 약관 또는 이와 법률상 쟁점에 있어 공통되는 약관으로 인한 분쟁이다.

ㅇ 조정신청 제외 대상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
- 조정신청의 내용이 약관의 해석이나 그 이행을 요구하는 사건
- 약관의 무효판정을 요구하는 사건
-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
-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 「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신청된 사건
- 불공정 약관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인 사건

(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ㅇ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고객(「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의 수가 20명 이상일 경우, 협의회는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 분쟁조정 절차

[분쟁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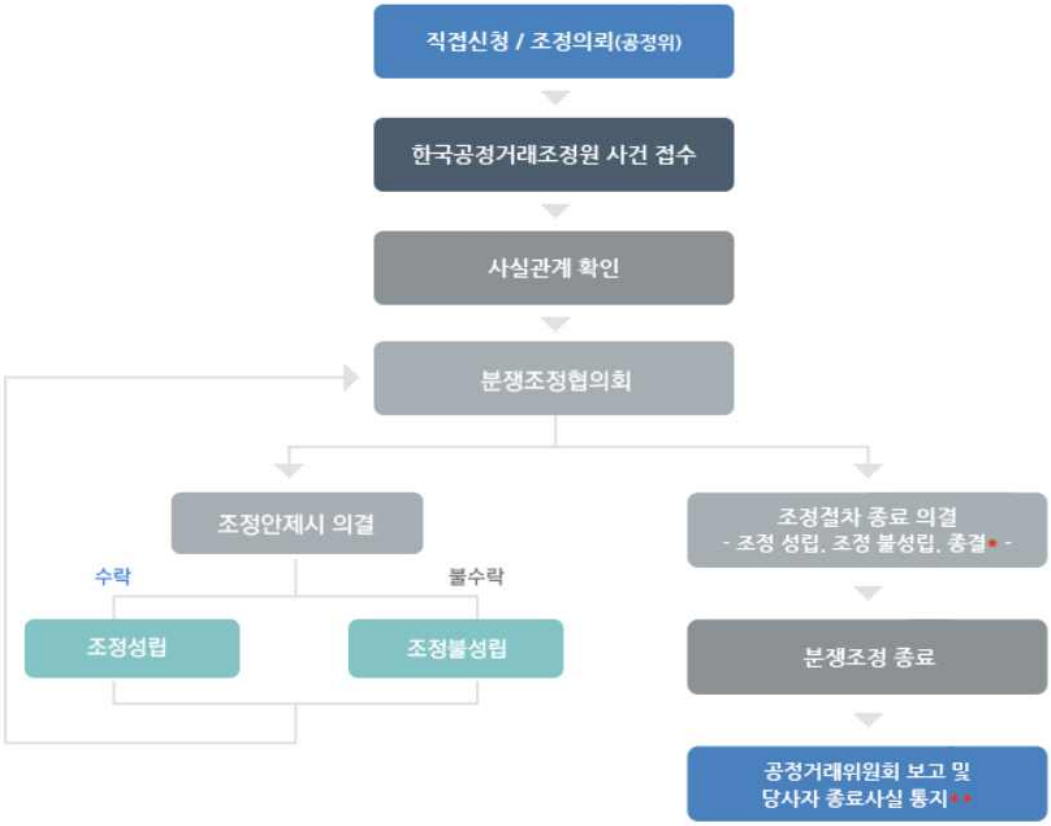

* 취하, 소제기, 각하, 조정안 미제시 등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피신청인의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신청인은 조정원의 통지 공문 내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 제출

- 양 당사자는 기한 내에 분쟁 관련 자료(보완서, 답변서, 일반 현황표)를 제출해야 하며, 당사자가 2회 이상 자료 제출 요청에 불응하면 분쟁조정 절차가 불성립될 수 있다. (일반 현황표는 양 당사자의 거래관계 및 분쟁조정 대상 여부 검토에 활용)
-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들의 검토를 검쳐 본격적인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조정절차 중 당사자가 직접 합의하여 조정이 종료될 수 있다. 반면 자료 제출 또는 출석요구 등 조사과정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정절차가 불성립될 수 있다.
- 사실관계 조사 등을 거친 모든 분쟁 사건은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당사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으며,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절차 종료 등 여부를 최종 의결하면 사실상 조정절차가 종료된다.
- 조정원은 조정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며, 조정 불성립으로 보고된 경우 공정위에서 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구의 의미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고 서명날인 등을 한다.

II.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 및 업무 시 유의 사항

1. 하도급법의 이해

□ 개념

- ㅇ「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대기업)와 수급사업자(중소기업)가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하도급법」 제1조).
- ㅇ「하도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수평적·협력적 관계를 통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거래상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도급법」의 특성]

□「민법」 내지「상법」의 특별법
- ㅇ「하도급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 적용을 배제하지 못한다.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 ㅇ「하도급법」은「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보다 우선 적용된다.

□「국가계약법」 등의 특별법
- ㅇ「국가계약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과 중복 적용가능. 단, 위 법 내용이「하도급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하도급법」이 우선적용 된다.

□「하도급법」은 국내법
- ㅇ 발주자가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국내 사업자(법인)인 경우에만「하도급법」이 적용된다.

[「국가계약법과 하도급법 비교」]

관련 규정	하도급법 규정	국가계약법 규정
검사 기준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검사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음	**<발주계약규정> 10.1**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기술자료 (지식)의 이용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3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구매자는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구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지연이자 지급율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15.5%**)를 지급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8조(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① 발주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지급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계약규정> 선금지급 6.4 선금보증금** 2)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회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금을 수령한 때에도 수령한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령일(계약체결 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발주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 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구조**

○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규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도급법」 체계도]

목적 및 적용대상	▪ 목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원사업자의 준수 의무사항 (9개)**	▪ 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제3조) ▪ 내국신용장개설의무(제7조)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제13조)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제15조)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의무(제16조의2)	▪ 선급금 지급의무(제6조)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제9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제13조의2) ▪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무(제16조)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 부당특약 설정금지(제3조의4)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제5조) ▪ 부당반품 금지(제10조)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금지(제12조)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금지(제12조의3) ▪ 부당한 경영간섭금지(제18조) ▪ 탈법행위 금지(제20조)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제4조)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제8조) ▪ 감액금지(제11조)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2조의2) ▪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제17조) ▪ 보복조치 금지(제19조)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1개)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제14조)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3개)	▪ 서류보존의무(제3조 제9항)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제21조 제1항)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제21조 제2항)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비교」]

구분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서면 발급 및 보전 의무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	물품등의제조를 위탁할 때 지체 없이 위탁의 내용 등을 적은 약정서를 수탁기업에게 발급할 의무(상생협력법 제21조)
서면 보관 의무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할 의무	수탁 • 위탁거래에 관한 서류의 비치 의무
부당한 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설정 금지	X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하게 목적물등에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금지 (간주규정 있음)	물품등에대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금지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물품등구매 강제 금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 •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 금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기업이 지정하는 물품등을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금지 (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선급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	X
물품구매대금 등 부당 결제 청구금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i) 목적물등에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ii)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금지	X
경제적이익 부당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X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의무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	X
설계변경•경제상황 변동등에따른 대금조정 의무	원사업자는 제조등의위탁을 한 후에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경제상황 변동 등의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위탁기업이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금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공급원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의무	수급사업자는 목적물등의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수급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금지	수탁기업은 물품등의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위탁기업은 10일 이내에 수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금지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상생협력법 제22조의2)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 금지	X
부당한 발주•위탁취소 금지	제조등의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이 제조등의위탁을 임의로 취소 • 변경하는 행위 금지	물품등의제조를 의뢰한 후 그 제조된 물품등에대한 발주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는 행위 금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부당한 수령거부 금지	제조등의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이 목적물등의납품등에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 • 지연하는 행위 금지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물품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금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공정•타당한 검사 의무	목적물등에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 • 타당하게 정할 의무	납품한 물품에 대한 검사를 할 때 객관적 타당성이 결여된 검사기준을 정하는 행위 금지(상생협력법 제23조)
검사결과 통지 의무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	객관적이며 타당성 있는 검사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검사하고, 검사 결과 불합격한 물품등에 대하여는 즉시 문서로 수탁기업에 통보할 의무(상생협력법 제23조)
부당한 반품 금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이 목적물등을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금지	X
수령증발급 의무	목적물등의납품등이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수탁기업으로부터 물품등을 받으면 물품등의 검사 여부에 관계 없이 즉시

	그 목적물등에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할 의무	물품 수령증을 발급할 의무(상생협력법 제21조 제2항)
부당한 대금감액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등의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금지 (간주규정 있음)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금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대금지급 의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하고 지급기일까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납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할 의무(**상생협력법 제22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	X
관세등환급액 지급 의무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 관세 등을 환급받은경우 환급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의무	X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금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위탁기업이 제조하는 제품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할인불가능 어음 지급금지	X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그 납품대금의 지급기일까지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을 받기 어려운 어음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상생협력법 제25조 제1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기술자료 : 물품등의제조 방법,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교부 의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줄 의무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게 줄 의무
기술자료 유용 •유출 금지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i)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ii)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비밀유지계약의무화)**	취득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금지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 규정 없음) **(비밀유지계약의무화, 미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기술자료 임치제도	X	수탁위탁기업은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임치기업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고, 위탁기업은 기술자료의 임치를 요구한 수탁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상생협력법 제24조의2)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보복 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등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수탁기업이 관계 기관에 고지한 행위 또는 분쟁조정신청을 이유로 수탁•위탁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수탁•위탁거래의 정지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탈법행위 금지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 금지	X

□ **관련 규정**

ㅇ 하도급 관련 규정에는 「하도급법」과 동법 시행령, 공정위에서 필요에 따라 고시하는 각종 고시와 심사지침들이 있다.

① 법령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ㅇ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고시·지침 등

ㅇ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ㅇ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ㅇ 부당특약 심사지침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시지침

ㅇ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ㅇ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ㅇ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ㅇ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ㅇ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ㅇ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ㅇ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ㅇ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2. 적용대상

□ **적용 범위**

ㅇ 「하도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하도급법」상 규정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법」상 규정된 위탁의 범위(제조, 수리, 건설, 용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거래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도급법」이 적용된다.

① 법적용 대상 사업자

ㅇ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있어 물품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용역을 수급인에게 도급(일의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하는 자를 발주자,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아 중소기업에게 하도급을

주는 사업자를 원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중소사업자를 수급사업자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3항). 또한, 발주자 없이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등을 위하여 회사가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도 하도급이라고 한다.

ㅇ 「하도급법」은 재하도급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발주자가 된다.

② 수급사업자

ㅇ 수급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말하며(「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포함한다.

[중소기업 해당여부]

□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고, 중소기업법에서 정한 평균매출액 이하여야 한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제외되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 최다 출자자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된다.

※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③ 원사업자

ㅇ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기업, 중견기업 포함)

ㅇ 중소기업자중 직전 연간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자(제조업)

ㅇ 「하도급법」상 중견기업의 경우, 대규모중견기업(직전 연간매출액 2조원 초과)과 소규모중견기업(업종별로 직전 연간매출액이 800억원~3,000억원 미만)으로 나뉘어진다. 대규모중견기업과 소규모중견기업이 하도급 관계가 형성될 경우, 소규모중견기업은 대금 지급 관련 규정에 한해서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

※ 소규모 중견기업이 대규모 중견기업으로부터 하도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규정(60일 대금 지급)이 적용되어 수급사업자로 보호받는다.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 모든 중소기업
▪ 20억 이상 중소기업자(제조)	▪ 원사업자보다 직전 연간 매출액이 적은 기업
▪ 대규모 중견기업(2조 초과)	▪ 소규모 중견기업 ※ 대금 지급 규정만 해당

[Tip] 업무시 주의사항

□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자의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총액을 말하며 이의 판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원칙으로 한다.

□ 공정위 하도급 조사 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이므로, 대기업자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 시 대응활동이 원할할 수 있다.

ㅇ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선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대금 지급을 불필요하게 선지급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업무 LOSS 발생, 조사 시 늑장 대응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

④ 법적용 대상 거래

ㅇ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용역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다. 업(業)으로 한다는 의미는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건설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 고려한다(관련 법에 따라 자격이 필요한 경우).
- 건설위탁은 건설업자가 그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건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다른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제9항).
- 건설위탁이 아닌 경우(예시)
  - 무면허건설업자와의 거래(경미한 공사는 제외)
  - 전기공사업 면허사업자가 해당 면허가 없는 전문건설업자와 거래
  - 건설장비임대차(포크레인 등)
- 용역위탁은 지식, 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하도급법」 제2조 11항).

[용역위탁의 범위]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중 설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 사업자가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경우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상 엔지니어링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공장 및 토목공사의 타당성 조사, 구조계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3. 위반시 제재

□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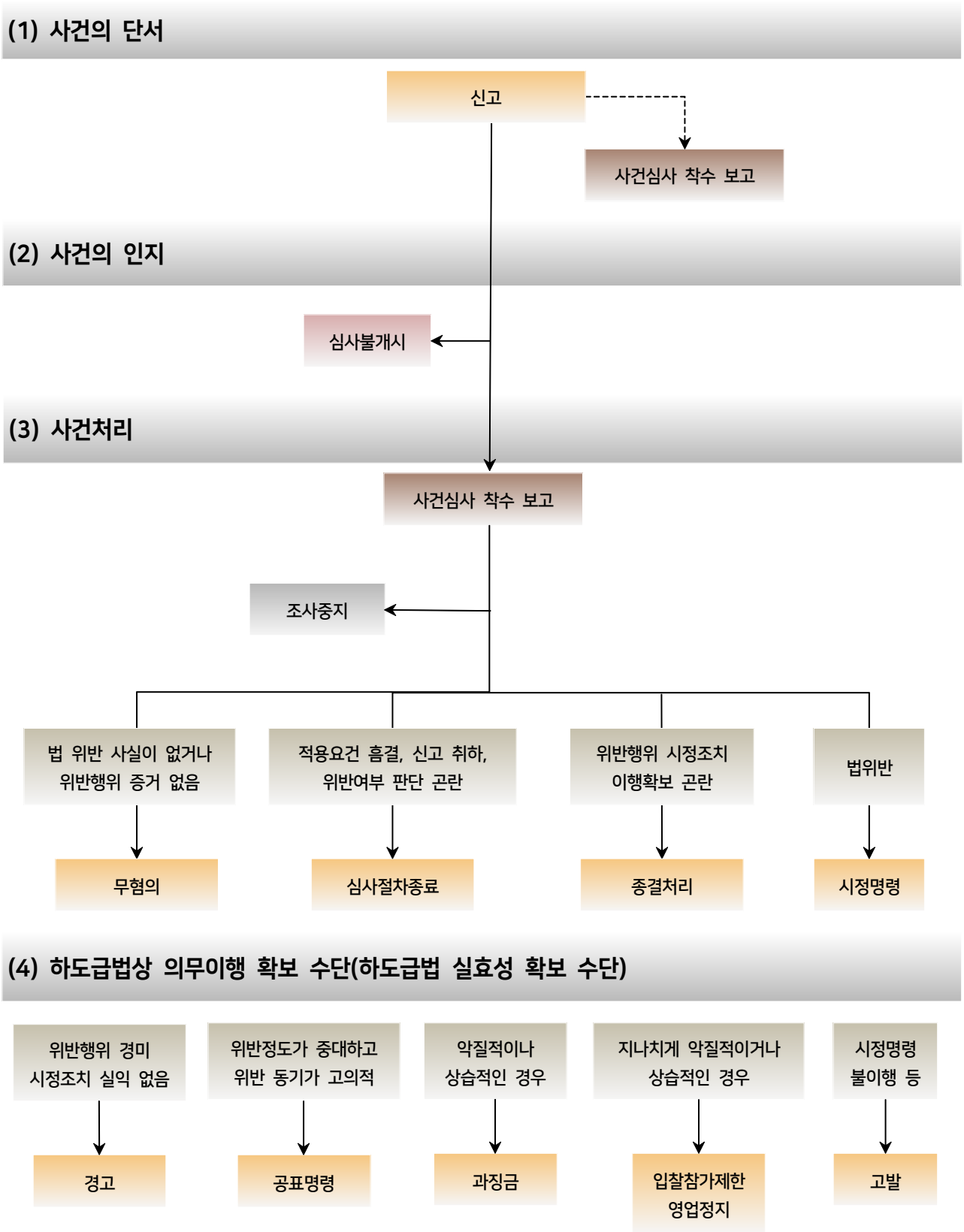

□ **하도급 위반 제재 유형**

① 개요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시정권고, 특약 삭제나 수정, 시정명령(작위, 부작위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부과: 하도급대금의 2배이하(법위반 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 □ 상습 법위반자 명단 공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입찰제한(3년간 벌점 5점 초과), 영업정지 요청(3년간 벌점 10점 초과)
행정질서벌	□ 과태료 부과: 2억원 이하 □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 조사거부: 사업자 2억원 이하, 개인 5천만원 이하 □ 서면실태 조사: 사업자 500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 하도급대금 2배 이하의 벌금 ㅇ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위반행위 □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공정위의 시정명령 불이행 ㅇ 경영간섭 ㅇ 탈법행위 □ 3억원 이하의 벌금 ㅇ 보복조치 □ 원칙적 고발(법위반 3회 이상 & 벌점 4점 초과)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
민사적 제재	□ 손해배상책임 □ 3배 손해배상 책임(4대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ㅇ 부당단가인하(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ㅇ 부당발주취소(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ㅇ 부당반품 금지 ㅇ 기술자료 유용 금지

②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의 고발요청권

ㅇ 공정위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수급사업자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손해배상책임

ㅇ 기존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탈취하여 유용한 경우에 적용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원사업자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등의 행위를 통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④ 과징금부과

ㅇ 일반원칙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한다.

ㅇ 원칙적 부과대상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수급사업자의 수나 그 피해금액이 많은 경우, 위반행위의 수가 많거나 과거 법위반전력이 많아 향후 법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가 ① 자율준수노력, ② 외부 법률 자문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위반행위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하도급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경우(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 또는 공정위로부터 미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또는 ④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전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확인한 법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과징금액 산정 단계]

□ 1단계: 기본과징금

ㅇ 하도급 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20%~80%, 다만 50% 미만인 부과율을 곱하여 도출된 기본산정기준이 법위반행위로 인해 심의일 당시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하는 불법적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함)을 곱하여 산정한다.

ㅇ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60% 이상 8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40% 이상 60%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20% 이상 40% 미만

□ 2단계: 조정과징금(행위자요소, 고의과실 여부, 자진시정 여부 등)

ㅇ 1차 조정 : 기본과징금의 20% 이내에서 가중(위반행위 횟수, 피해수급사업자의 수)

ㅇ 2차 조정 :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등에 따른 조정

* 감경: 위반행위 자진 시정(10~30%), 조사협조(10~20%)

* 가중: 보복조치(20%),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10~20%),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20~50%)

□ 3단계: 부과 과징금

ㅇ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과징금 납부능력, 시장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회사가 원사업자인 경우 하도급법상 유의사항

(1) 계약체결시 하도급법상 유의사항

(가)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가) 개념

ㅇ 서면 교부 의무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시 사실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간 사후분쟁 예방 필요성 때문에 공정위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① 중요 사항(법정기재사항)을 기재한 서면 발급

-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정기재사항(6가지)을 작성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한다. 교부된 서면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서면 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최소한 수급사업자가 위탁업무를 시작하기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ⅰ) 제조위탁: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ⅱ) 수리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ⅲ) 건설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ⅳ)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나) 법위반 유형

ㅇ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불완전한 서면교부)

ㅇ 추가 또는 변경된 위탁 수행 내용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위탁 이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 등 서면을 지연 교부한 경우

ㅇ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

ㅇ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

다) 서면발급의무 추정제도

ㅇ 원사업자의 구두발주시, 수급사업자는 서면통지로 위탁내용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 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의 확인 요청 가능하다

ㅇ 만일,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통지내용 대로 하도급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한다.

ㅇ 통지 및 회신의 방법은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원·수급사업자의 주소(전자우편 주소 포함)로 보내어야 한다.

[Tip] 업무시 주의사항

□ 하도급 서면발급 관련, 하도급서면(계약서)에 포함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발급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설계변경 및 감액, 기간연장 시 변경계약서 등 미발급 사례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하도급법 적용 대상거래에 대하여는

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 혹은

② 현 계약서에 필수 기재 항목(6개)을 포함시켜 수정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을 선택

(나) 부당한 특약 설정 금지

가) 개념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때 교부하거나 수령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장설명서, 제안요청서, 물량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특수조건, 과업내용서,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설정한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나) 위법성 판단기준

ㅇ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체결한 하도급거래의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계약조건이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여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여부
-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목적물 등의 내용 및 특성
-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다) 법위반 유형

ㅇ 서면에 없는 비용 전가
ㅇ 민원처리, 산업재해 처리비용 전가
ㅇ 입찰내역에 없는 비용 전가
ㅇ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전가
ㅇ 설계나 작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비용 전가
ㅇ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한 비용 전가
ㅇ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전가
ㅇ 위탁시점에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책임 전가
ㅇ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한

(다)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금지

1) 판단기준

ㅇ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 ① 부당하게 목적물 등과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부당하게’의 판단기준

- 부당하다는 것은 하도급대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하도급의 내용, 수단 및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에 대한 판단 원칙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 인지 여부이다. 단,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되며, 신규 개발품의 경우는 해당 목적물 등의 제조원가 + 해당 원사업자가 거래 중에 있는 같거나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를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라고 본다.

2) 법위반 유형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 ㅇ 협조 요청등을 통한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금액 할당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취급
- ㅇ 거래 조건의 착오를 일으키는 등의 방법
- ㅇ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
- ㅇ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
- ㅇ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Tip] 업무시 주의사항

□ 도급계약체결 지연으로 하도급계약이 선 체결되고 있는 과정에서 업체선정 입찰시 예정가격을 입찰일 3개년 전 최저 도급낙찰률로 설정한 행위는 과도하게 도급낙찰률보다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한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 도급계약 체결 시 낙찰률과 입찰 시 최저 낙찰률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좀 더 명확하게 입찰 관련 서류에 그 내용을 명기하여 입찰을 실시 할 필요가 있음

(2) 계약이행시 하도급법상 유의사항

(가) 부당한 위탁(발주)취소 및 수령 거부 금지

1) 부당한 위탁 취소

-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위탁을 할 때 정한 발주량 또는 사양 등 위탁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여기서 위탁한 내용을 변경한다는 것에는 다음 세 가지를 포함한다.
  -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 당초에 위탁 내용과 다른 작업을 시키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수령 후 추가적으로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 ㅇ 위탁 취소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탁취소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고 위탁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2) 부당한 수령거부

- ㅇ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게 두게 되는 것으로 검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수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목적물을 이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검사를 시작하는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 ㅇ 부당한 수령거부는 납기일 이후에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ㅇ 부당한 수령거부의 판단기준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할 때 정한 납기 및 장소에서 목적물 수령을 거부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위탁계약 체결 및 수령거부의 경위, 위탁계약의 내용, 수령거부한 목적물 등의 범위, 계약 이행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나) 부당반품의 금지

1) 유형

ㅇ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에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식에 상관없이 수령한 목적물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2) 반품의 예외 사유

ㅇ 수급사업자의 책임에 따른 반품은 가능하다.
- 발주한 목적물과 다른 물품 등이 납품된 경우
- 오손·훼손 등 하자있는 물품이 납품된 경우 등

3) 법위반 유형

ㅇ 불명확한 검사 기준 및 방법에 근거한 반품
ㅇ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ㅇ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ㅇ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지연
ㅇ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
ㅇ 납기지연을 용인한 객관적인 사실
ㅇ 하자에 대한 책임

(다) 검사 및 검사 결과 통보 의무

1) 원칙

① 검사기준의 결정방법
- 검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될 경우, 목적물 완성 및 납품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준시점이 불명확해짐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확정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이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객관적인 검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 하에 제3의 공인기관 등에 의하여 검사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 여기서의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기준의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판단은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② 검사결과의 통지의무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회사의 준공 또는 기성 부분을 통지 받은 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이며,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회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

③ 검사비용문제
- 검사는 원사업자를 위한 것이므로 검사에 따른 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법위반 유형

ㅇ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와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하도급법」 위반사항이 있는데, 먼저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해 부당특약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고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서면 미발급이 있다. 또한 검사기준이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위탁취소, 수령거부, 반품, 감액, 대금미지급 등의「하도급법」위반사항이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는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이행하여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해야 한다.

(라) 하도급 대금 감액 행위 금지

1) 원칙

ㅇ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 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의 명목과 방법, 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 행위는 금지된다.

ㅇ 즉,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시에 정해진 금액(발주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상 위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2) 감액의 정당성 판단기준

ㅇ 하도급 대금 감액의 정당성은 여부는 하도급계약 체결 및 감액의 경위, 계약이행 내용, 목적물의 특성과 그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감액은 명목이나 방법, 시점,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원사업자가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판단된다.

3) 법위반 유형

ㅇ 소급단가 적용

ㅇ 원사업자의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의 발주취소

ㅇ 현금지급이나 조기지급을 이유로 감액

ㅇ 원사업자의 손해발생에 영향이 없는 수급사업자의 과오

ㅇ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ㅇ 납품시점에 떨어진 물가나 자재가격

ㅇ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ㅇ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

(마) 기술자료제공 요구 및 유용행위금지

1) 기술자료가 되기 위한 요건

ㅇ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말한다.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자료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R&D)·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타 사업자의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자료로서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생산·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 기술자료에 해당하려면 수급사업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고 있는 것

2) 기술자료제공 요구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의 제출, 제시, 개시, 물리적 접근 허용(전자파일 접속·열람허용),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ㅇ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3) 기술자료 유용행위

ㅇ 기술자료의 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열람" 등을 통해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도 대상이 된다.

ㅇ 기술자료 유용의 위법성은 기술자료 제공 요구 시 사전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제시한 기술자료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벗어나 사용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침해하였는지를 위주로 판단하게 된다.

4) 손해배상 책임

ㅇ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제출을 사전에 서면동의 없이 강제로 요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하고(「하도급법」 제35조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을 정당한 대가 지급 없이 유용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하도급법」 제35조 제2항).

ㅇ 다만, 기술요구 또는 유용의 경우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하도급법」 제35조 제1항, 2항).

5) 법위반 유형

ㅇ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ㅇ 취득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Tip] 업무시 주의사항

□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수령할 경우에는 해당 자료에 대하여 기술자료 여부 판단
⇨ (기술자료 해당) 기술자료제공 요구서 발급 ⇨ 비밀유지계약체결 ⇨
기술자료 수령 ⇨ 비밀유지계약 내용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바) 부당한 경영간섭(전속거래 강요행위 금지 및 경영정보 요구) 금지

1) 개념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

ㅇ 경영상의 정보 유형

-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납품을 위해 투입한 재료비, 노무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 내역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의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납품조건(납품가격을 포함)에 관한 정보 등
-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 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 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3) 계약완료시 하도급법상 유의사항

(가)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1) 개념

ㅇ 원칙

-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경우 목적물 수령일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산정시 기준일이 된다.
  * 여기서의 목적물 수령일이라 함은 이동이 가능한 물건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납품한 날(사실상 원사업자의 지배에 두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의 경우에는 검사를 개시한 날을 의미한다.

ㅇ 60일 이내 대금 지급 원칙의 예외

- 일괄마감제도를 채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본다. 즉, 목적물의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업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그 정한 날을 목적물 수령일로 본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금대급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 추가공사 및 공사중단, 계약해지 등으로 정산이 되지 않아 하도금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의 목적물 인수일은 정산시점에 불구하고 추가공사의 완료일, 공사중단일, 계약해지일 등을 목적물 인수일로 본다.

2) 기간의 계산

ㅇ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기간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기간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거래일에 기간이 만료하는 것으로 본다.

3) 지연이자 지급 의무

ㅇ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연 15.5%)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적물을 수령하고 90일째 되는 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면 30일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4) 어음할인료 지급 의무

ㅇ「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7.5%)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법정지급기일에 30일이 만기인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3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5)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의무

ㅇ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어음을 대체하여 사용하는 결제수단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을 말한다. 특히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까지 해당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6)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

ㅇ「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외에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 법위반 유형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선급금 지급 의무

1) 개념

- 하도급대금은 물품 등의 납품 또는 시공을 완료한 다음 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것을 기성금이라고 한다. 경우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착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하도급법」상 선급금이라고 한다.

2) 원칙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 만약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지급 방법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액에 원도급금액 대비 하도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준수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지급시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어음만기일유지의무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 지급의무등이 존재한다.

① 현금결제비율유지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을 경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어음만기일유지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어음의 만기일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을 지급해야 한다.

③ 지연이자 지급 의무

- 선급금은 선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일부이므로 지연 지급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라면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주어야 하고, 15일이 지난 이후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사업자가 1월 15일 선급금을 현금으로 받고 3월 30일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면, 60일에 대한 지연이자(연15.5%)를 지급해야 한다.

5) 법위반 유형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의무

1) 조정절차

① 조정내역 통지

- 원사업자는 설계변경 등에 의해 하도급대금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해당 하도급대금 조정내역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별도로 통지할 필요가 없다.

② 변경계약 체결

- 그 다음으로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과 관련된 변경계약을 해야 한다. 즉,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조정 받은 내용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

③ 조정금액 지급

- 원사업자가 추가금액을 발주자로부터 지급을 받은 경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는 날로부터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2) 조정기준

① 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② 불분명한 추가금액의 내용

-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③ 총액지급 방식

-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된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적법하나, 수급사업자 각각에 해당하는 비율미만으로 증액시켜주는 경우에는 위법하다.

3) 조정방법

ㅇ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물가변동 대금조정의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 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여 총액조정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만, 품목별 조정방법의 경우 해당공종별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세부공사 내역별로 조정받은 내용과 비율로 해야 한다.

(라) 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 금지

ㅇ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계약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다음 행위는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 해당 목적물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자기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 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ㅇ 사전에 물품구매대금 등의 결제를 사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을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마)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금지

ㅇ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12조의2).

(바) 보복조치 금지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19조).

- 원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하도급」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하도급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ㅇ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하도급법」 제20조).

(사)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

ㅇ 수급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수급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사업자는 별도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2) 원사업자의 협의 개시

ㅇ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ㅇ 구체적인 조정 대금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3)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ㅇ 조정신청일부터 10일 경과 후에도 원사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ㅇ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ㅇ (Fast Track)협의개시 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써, ① 협의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조정금액이 상호 간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③ 합의 지연 시 영업활동의 심각한 곤란 등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

- ‘신속분쟁해결절차(Fast Track) 제도’는 신속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 것이 명백한 경우, 종전 「하도급법」에서 정한대로 30일의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협의가 개시되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30일간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회사가 발주자인 경우 유의사항

□ 개요

- ㅇ 회사는 하도급업체의 재위탁시 발주자로서 지위를 가지며,「하도급법」제14조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ㅇ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ㅇ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공제할 수 있다.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직접 지급의무**

ㅇ 직접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확정

- 직접지급금액은 일반적으로 수급사업자의 기성청구에 따라 원사업자의 기성검사·확인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된다.

ㅇ 발주자의 직접지급한도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범위로 한다. 따라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직접 지급하면 된다.

[Tip] 업무시 주의사항

□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 할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정해진 대금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직접지급함에 있어서 원사업자에게 기지급한 금액은 제외하고 선급금은 공제가 가능
□ 직접지급요청이 회사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수급사업자가 증명)
□ 직접지급시 공탁사유가 있을 때 공탁이 가능하다(직접지급 효력 발생 전 가압류 등)

6. 업무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구분	체크 항목	V
하도급 거래 현황	1.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인가? ※ 거래의 상대방이 중소기업자여야하고, 위탁의 내용이 하도급법상 용역, 건설, 제조위탁에 해당되는 경우 ※ 회사는 하도급법상 설계·기술 용역 위탁, 건설위탁(건축·토목공사)시 법 적용대상임	
서면 발급	1.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날인된 계약서를 제공하는가 ?	
	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는가?	
	3. 서면 발급시 다음과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었는가? ① 목적물의내용 ② 납품·인도또는제공하는시기및장소 ③ 목적물등의검사의방법및시기 ④ 하도급대금과그지급방법및기일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등을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⑥ 원재료등의가격변동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요건, 방법 및 절차	
	4. 양 당사자의 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였는가?	
	5. 계약서 등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몇 년간 보존하는가? ※ 하도급법상 서류 보존기간 : 하도급거래 종결일로부터 기술자료 관련 서류는 7년, 나머지 서류는 3년	
부당 특약	1. 회사의 하도급계약 조건에 아래와 같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 있는지? ※ 위법성 판단기준: 계약조건이 공정하고 타당한지 여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 하였는지 ②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품명, 내용, 규격, 수량, 재질, 공법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③ 당해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지 ④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⑤ 목적물등의 내용 및 특성 ⑥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2. 작업지시서, 계약서 부속서류에 관해서도 부당특약을 점검하였는가?	
	3. 업무 범위가 애매한 부분에 관해 관련 법령이나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을 살펴보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였는가?	
	4.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또는 '일체 ' 의 용어를 사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의무/책임으로 규정하였는가?	
	5.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역을 작성하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고, 현장설명서에만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는가?	

	1) 계약조건/입찰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발생 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2)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산재, 인허가, 민원처리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3) 발주자 또는 회사가 설계나 작업을 변경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4)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부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5) 수급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사업자가 이를 시행하는 경우 당해 보수비용의 몇 배를 원사업자가에 지불해야 하는 약정	
	6) 계약이행보증을 반드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로 해야 하는 약정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1. 전년 대비 하도급대금(단가)을 인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는지?	
	2. 경쟁입찰에서 예가 산정시 예가 산정은 적정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였는가?	
	3. 경쟁입찰에서 재입찰을 하려는 경우(EX. 최저가입찰 금액이 예가 보다 높으면), 현장설명서 등에 그 사유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공지하였는가?	
	4. 경쟁입찰에서 예가 산정시 입찰 과정에서 예가가 변동되지 않음을 담보하고, 추후 필요시 참가업체가 예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는가?	
	5. 회사가 전년 대비 하도급대금(단가)을 인하한 이유는?	
	1) 수급사업자간 가격인하 경쟁	
	2) 발주물량 증가로 인한 인하	
	3) 원자재가격 또는 인건비 하락	
	4)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또는 원가절감	
	5) 기타	
	6. 하도급대금(단가) 결정/인하 방법은?	
	1) 수급사업자의 견적단가대로 결정 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	
	2) 종전 단가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	
	3) 회사 예산/자금 사정으로 그 범위내에서 결정	
	4)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금액으로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1.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해제하거나 변경한 경우가 있는지?	
	2. 계약을 취소/해제하거나 변경한 이유는?	
	1) 발주자(고객사)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 중단에 따른 취소	
	2) 수급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3) 원자재/장비 지연등에 따른 취소	
	4)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서면으로 계약 이행을 최고+위탁 취소)	
	5) 기타	
기술 자료	1.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연간 요구 건수는 어느 정도인지?	

제공 요구	※ 기술자료 : 수급사업자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것 ※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기술정보/자료 ※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제원, 설계도면, 연구자료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	
	2.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사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3. 회사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발급하는지?	
	4.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제공 시,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를 교부하였는가?	
부당한 경영 간섭	1. 수급사업자에게 회사가 지정한 물품/장비 등을 구입/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지?	
	2.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 경영상 정보 : 원가계산서,원가내역서, 원가산출내역서,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지급내역 등	
	3.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 등의 매출관련 정보을 요구하였는가?	
	4. 수급사업자의 경영전략 관련 정보 및 영업관련 정보(거래처명부, 납품조건 등)를 요구하였는가?	
	5.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 접속 정보를 요구하였는가?	
	6. 수급사업자에게 회사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지?	
감액 금지	1. 당초 계약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적이 있는지?	
	2. 위 경우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이유는?	
	1) 납품한 물품/용역 등의 하자	
	2) 발주서/계약조건대로 납품되지 않음	
	3) 회사의 저가 수주/염가 판매	
	4) 회사의 자금 사정	
	5) 발주자(한전 또는 고객사)의 발주 취소	
	6) 위탁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가격 인하	
	7) 기타	
	3.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감액 사유와 기준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지?	
목적물수령 거부	1.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물품/용역 등을 수령/인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지?	
	2. 회사가 물품/용역 등의 수령/인수를 거부한 이유는?	
	1) 계약내역 대로 납품하지 않음	
	2) 발주자(한전 또는 고객사)의 발주/주문 취소 변경	
	3) 수급사업자의 납품기한 미준수	
	4) 발주자(한전 또는 고객사) 클레임	
	5) 기타	

하도급대금 지급	1. 회사는 하도급 계약상의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목적물 수령일 - 용역위탁: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 -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행일	
	2.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부분을 15일 이내에 지급하였는가?	
	3. 회사가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금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지?	
	4. 회사가 위 유보금을 설정하는 이유는?	
	1)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2) 회사와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방법으로 유보금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3) (하자보증 방법에 대한 합의가 없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보금 설정을 원하기 때문에	
	4) 회사가 하자보증서 제출과 동시에 유보금 설정을 모두 원하기 때문에	
	5) 기타	
선급금 지급	1. 회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가?	
	2. 회사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도 선급금을 지급하는가?	
하도급대금의 조정	1. 하도급계약 목적물의 공급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가 변동된 경우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가 있는지?	
	2. 위와 같이 회사가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는가?	

Ⅳ.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1. 거래상 지위남용의 개요 및 유형

□ 개념

ㅇ 거래상 지위남용이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4호). 거래상 지위남용의 주체인 사업자는 거래상지위가 있어야 한다.

ㅇ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ㅇ 다만,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법」의 불공정성 판단기준을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 완화한 것이므로 거래상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의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Tip] 업무시 유의사항

□ 민사행위와의 구별

ㅇ 거래개시 :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업자 선택 가능성, 계약 내용 인지하여 거래 선택했는지 여부

ㅇ 거래계속 :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상 지위 유무

□ 단, 거래상 지위 인정되어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Tip]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성격과 범위

□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 '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 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본다(2003두10299).

[회사 관련 발생할 수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유형]

□ 회사는 대규모 발주자 또는 수요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행위, 부당한 거래중단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ㅇ 거래상의 지위 남용행위 사례

- 물가변동 및 계약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
-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기 연장 시 간접비의 미지급
- 거래상대방의 귀책에 의하지 아니한 민원처리비용의 전가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특정 자재의 구매 또는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종용
- 회계예규상의 현금·어음결제비율보다 어음비중을 높여서 지급
-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

□ **판단기준**

ㅇ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계속적인 거래관계 여부

-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위한 전속적인 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일방적인 거래의존도

-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Tip] 거래상 지위 여부 판단시 고려사항
(대법원 2003두1646)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또한 거래상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및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유형**

구분	유형	세부유형	회사가 적용 받을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구입강제	×
		이익제공강요	○
		판매목표강제	×
		불이익제공	○
		경영간섭	○

① 구입강제

(가) 개념

ㅇ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구입요청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당하였거나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강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ㅇ 구입강제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입이 강제되는 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 자신의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자의 것일 수도 있다.

(나) 판단기준

- ㅇ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ㅇ 구입강제행위의 특성상 거래 당사자간 계약 당시 상대방이 추후 당해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 ㅇ 구입을 강요당한 상품 또는 용역이 당해 거래의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Tip] 구입강제 vs 거래강제

□ 구입강제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유형의 하나이다. 따라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불이익을 주었는지를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되며,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여기에 반해 거래강제는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행위 유형으로 나뉘며, 특히 끼워팔기는 구매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지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진다. 따라서 구입강제와 거래강제 행위의 구분은 부당성 판단 요소에 차이가 있다.

② 이익제공강요

(가) 개념

- ㅇ 이익제공강요라 함은 거래 상대방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 ㅇ 이익제공 강요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다.

(나) 판단기준

- ㅇ 첫째,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금전·물품·용역 기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셋째, 그 이익제공강요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 경제상 이익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품, 용역을 비롯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 이익제공강요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여 소극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행위도 포함한다.
  -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이익제공 강요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당해 이익제공의 내용과 성격,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이익을 제공받았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 또한,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의 경제상이익 제공 등의 요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의 동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가 다루어질 경우 거래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 상대방의 거래의존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거래 상품의 특성과 시장상황, 거래상대방의 변경 가능성, 당초의 거래조건과 변경된 거래조건의 내용, 거래조건의 변경경위, 거래조건의 변경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상관습 및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통상적으로 '강요'는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요자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상 '강요'는 협조, 요청 등 방식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행위 등 '묵시적 강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다) 관련 사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대납하도록 강요한 행위(공정위 의결 제2016-022호)]

[사실관계]

피심인(국가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 제4-1공구 노반신설공사' 등 11건의 건설공사를 거래상대방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10.부터 2014. 2. 5.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총 11건, 19,76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이를 삼성물산 등 11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2010. 7. 8.부터 2014. 4. 3.까지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이익제공을 강요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고객센터에게 특정 물품을 직원선물로 구입하도록 강제(의결 2014-105호)]

[사실관계]

피심인(서울도시가스)는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2010년 12월 초순경에 주식회사 ○○○로부터 올리브오일(단가 17,600원, 수량 798개, 총 구입액 14,044천 원)을 구입하여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송년 선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위 고객센터들로 하여금 2011년 초순경에 같은 구입처로부터 케이크(단가 30,000원, 수량 716개, 총 구입액 21,470천 원)를 구입하여 고객센터 직원들에게 설날 선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고객센터에게 특정 물품을 직원선물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구입강제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③ 판매목표강제

(가) 개념

- ㅇ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 ㅇ 대체로 상품의 경우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 일정수의 가입자나 회원확보가 문제된다.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ㅇ 판매목표강제의 상대방은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 판단기준

ㅇ **첫째,**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거래 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셋째,**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ㅇ 거래내용의 공정성 판단 시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ㅇ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계약의 해지나 판매수수료의 미지급 등 불이익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강제성이 인정되나, 거래상대방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자발적인 협력을 위한 수단으로 판매목표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판매장려금이 정상적인 유통마진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효과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불이익제공

(가) 개념

ㅇ 불이익제공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칭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당초부터 설정하였거나 기존의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ㅇ 거래조건에는 각종의 구속사항, 저가매입 또는 고가판매, 가격(수수료 등 포함) 조건,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반품, 제품검사방법, 계약해지조건 등 모든 조건이 포함된다.

ㅇ 불이익제공은 적극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 등을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ㅇ 다만,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절차에 의해 이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ㅇ 거래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에 한정되며, 소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판단기준

ㅇ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ㅇ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목적, 효과·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 관련 사례

[국가철도공단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강요한 행위(공정위 의결 제2016-22호)]

[사실관계]

(1) 설계 · 시공 일괄공사 설계변경계약시 공사대금 감액행위

피심인(국가철도공단)은 2010. 11. 19.과 2011. 5. 27.에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에게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제4공구 건설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공사 방식으로 위탁하였다.

그 후 피심인은 수도권고속철도 적기 준공, 수도권고속철도 횡단구간 및 개천을 내는 사업 시행 물량 변경 등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2013. 4. 25.부터 2014. 12. 26.의 기간 동안 현대산업개발 등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와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턴키공사의 경우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변경 당시 단가의 71.96%~94.25% 수준으로 신규비목 단가를 책정하여 공사비를 산정함으로써, 3개 공동도급업체 소속의 10개 건설사에 대하여 총 2,770,272천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감액하였다.

(2) 간접비 미청구 동의서 징구행위

피심인은 2013년 초 거래상대방이 자신을 대상으로 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급증하자, 2013. 4. 8. 이사장 주재로 '공사간접비 소송관련 대책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동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시공사로부터 '간접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약 내용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 설계변경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간접비 최소화를 위한 현장관리 강화방안'을 2013. 4. 26.에 작성하여, 2013. 4. 29.자로 피심인 소속 각 부서 및 지역본부에 시달하였다.

이 같은 '현장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전후하여 피심인은 자신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제2-4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등 총 14건의 공사·용역계약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경부터 2015. 4. 8.까지 쌍용건설 등 68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 등을 피심인에게 추가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3) 과태료 전가행위

피심인은 '호남고속철도 제4-1공구 노반신설공사' 등 11건의 건설공사를 거래상대방에게 건설위탁하면서 도급금액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과소하게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2010. 3. 10.부터 2014. 2. 5.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총 11건, 19,76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이를 삼성물산 등 11개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여 2010. 7. 8.부터 2014. 4. 3.까지 대납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1) 거래상대방과 철도시설 설계·시공 일괄공사에 대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거래상대방과 철도시설공사 및 용역에 대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한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간접비 등에 대한 지급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징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피심인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부과 받은 과태료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하여 대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익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의결 제 2001-050호)]

[사실관계]

1. 피심인(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현장관리인 인건비/경비 등 간접비용 3,29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또 납품지시 후 납기에 임박하여 이미 생산완료된 납품물량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자기가 인수한 물품을 납품업체에게 보관시키면서 그에 따른 보관비 2,36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대형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업체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 가입 시 보험회사와 보험요율을 지정해주고 반드시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시공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미지급행위, 일방적인 납품 취소 및 물품보관비 미지급행위를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하고, 시공업체에 대하요 보험회사 및 요율을 지정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로 판단하여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및 구속조건부행위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192백만원을 부과하였다.

거래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공사비 감액 [(의결 제 2005-043호)]

[사실관계]

피심인(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요자의 증가 등 거래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여 2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피심인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거래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증감된 물량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출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거래상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거래상대방과 협의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당초계약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적용함으로써 공사비를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공정위의 판단]

공정위는 설계변경이 거래상대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에 해당되고 피심인이 증가된 물량에 대한 단가를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당초계약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적용함으로써 협의하여 적용될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사비를 감액한 것은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

⑤ 경영간섭 내용

(가) 개념

-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서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 거래상대방의 거래내용이란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 등과 달리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판매가격·부과수수료율·결제조건 등 거래와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포함한다.
- 경영간섭 중 하나로 거래내용을 '제한'한다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판매가격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거나 판매품목을 승인하고 단가를 조정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지급대금 수준과 결제조건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키는 행위, 거래상대방이 징수하는 수수료율을 직접 결정하거나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요율결정에 관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적어도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필요로 한다.

[Tip] 1·2차 협력사간 업무시 유의사항

□ 1차와 2차 협력사간 계약 내용에 대해 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절대 금지(경영권 침해)

- ㅇ 1·2차 업체간 납품 대금의 결정 문제는 해당 협력회사에 대한 경영권 침해로 판정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견적을 받을 때 회사가 필연적으로 간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로 명기(제3자 참석한 회의록)해서 증거로 남겨야 한다.
- ㅇ 단, 회사가 고객의 품질 요구수준 및 고객의 요구 등과 같은 명확한 이유에 의해 행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 역시 과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나) 판단기준

- ㅇ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어야 하며, 둘째,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고, 셋째, 이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Tip]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의결권의 행사나 채권회수를 위한 간섭으로서 법적 근거가 있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투자자 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수단의 합목적성 및 대체수단의 유무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현찰판매 또는 직접 판매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 및 상담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경영효율성의 제고 또는 상품의 안전성확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2. 위반시 제재

□ **개요**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작위, 부작위 등)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과징금부과: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5 or 정액과징금(산출곤란, 5억원 미만)
행정질서벌	□ 공정위 조사 불응의 경우 과태료 부과: 사업자 1억원 이하, 개인 1천만원 이하
형사적 제재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행위자 및 법인 처벌 ※ 공정위의 고발 행사가 이뤄져야 형사적 제재 가능(전속고발권)
민사적 제재	□ 손해배상책임

[Tip] 양벌규정

□ 규정내용

ㅇ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공정거래법」 제70조).

□ 규정취지

ㅇ 양벌규정이란, 법위반 행위를 직접 행한 행위자 외에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어 범죄능력이나 수형능력이 부인된다.

ㅇ 따라서, 법인이 법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양벌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은 부과할 수 있다.

ㅇ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을 둔 취지는 사전에 법 위반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고,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과징금부과**

ㅇ 일반원칙

-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규정된 세부행위 유형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① 다수의 경쟁사업자, 거래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② 위반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또는 ③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2항 관련 별표 경고의 기준 중 '2.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문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ㅇ 부당한 지원행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행한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지원객체가 참여하는 관련 시장에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나타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에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ㅇ 보복조치

- 「공정거래법」 제23조의3(보복조치의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위반의 정도나 위반의 효과가 미미한 경우 등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Tip] 과징금 산정 단계

□ 1단계: 기본과징금

ㅇ 산정기준은 위반행위를 그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후, 위반행위 유형별로 아래에 정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는 위반행위 유형별로 마련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의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ㅇ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판단하되,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발생의 범위,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

중대성의 정도	기준표에 따른 산정점수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2.2 이상	1.6% 이상 2.0%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1.4 이상 2.2 미만	0.8% 이상 1.6% 미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4 미만	0.1% 이상 0.8% 미만

□ 2단계: 조정과징금(행위자요소, 고의과실 여부, 자진시정 여부 등)

ㅇ 1차 조정 : 기본과징금의 100% 이내에서 가중(위반행위 횟수, 피해수급사업자의 수)

ㅇ 2차 조정 :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가중·감경은 위반사업자에게 정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각각의 가중비율의 합에서 각각의 감경비율의 합을 공제하여 산정된 비율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1차 조정된 산정기준에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중·감경의 결과 가감되는 금액은 1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50%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 3단계: 부과 과징금

ㅇ 조정과징금의 50%까지 감액 또는 면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과징금 납부능력, 시장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3. 업무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과정

체크 항목	V
□ 낙찰후 계약시 계약단가, 계약물량등을 삭감하지는 않았는가?	
□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설정하지는 않았는가? •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서상의 문구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회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조건 • 계약체결 후 회사가 계약물량, 금액, 납기 또는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은 이에 응해야하며,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 • 사후정산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산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 • 계약과 관련하여 사후에 감사원, 자체 감사등 일체의 감사에 의한 판정으로 변상 요구될 경우 귀책사유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조건 • 과업지시서등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꼭 필요하여 추가로 작업 지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거래상대방의 부담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조건 • 회사의 자금사정등에 따라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건 • 물품제조구매를 발주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성격이나 거래관행에 반하여 절대적으로 불리한 납품기한을 부과하는 거래조건 • 계약체결 후라도 예정가격산정 또는 원가산정의 착오를 이유로 또는 이미 체결된 계약상의 물품구매가격이 동종 물품구매가격에 비하여 고가임이 밝혀질 경우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위하여 증빙자료 등의 사후 검토완료시까지 계약 금액의 일부를 유보하는 조건 • 거래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 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이행촉구 등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은 거래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이를 위해 계약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 **계약이행과정**

체크 항목	V
□ 예산사정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물량을 일방적으로 줄였는가? •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분할납품을 받으면서 예산 사정등을 이유로 당초 계약물량 중 일정시기의 납품물량을 일방적으로 현저하게 줄여서 납품받는 행위 • 납기만료일에 임박하여 일부 물량을 발주 취소하여 삭감된 물량으로 변경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는가? • 물가변동 또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면서 계약금액 인하요인이 발생할 경우 계약단가를 즉시 감액하면서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상조정을 지연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졌는가? • 설계변경을 하면서 예산상의 이유로 계약금액은 변경하지 아니하는 행위 • 물품구매과정에서 일부 변경품목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물량 증가분에 대하여는 업체 제시가, 계약단가, 추정실례가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고, 물량 감소분에 대하여는 최고가격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계약 대금에 대한 정산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는가? • 당초 회사가 조달해 주기로 한 자재를(사급자재) 회사의 사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구입하여 사용토록하면서 대금을 실제 구입단가가 아닌 회사가 대량 구입할 때나 경쟁입찰시 산정한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거나 거래상대방이 그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지급 하였는가? •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하자발생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하자이행증권과 별도로 계약 대금 중 일부를 유보하였다가 사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용역대금중 일부를 지급유보하였다가 후에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실제 계약일보다 계약체결을 늦게 하여 대금지급을 지연하는지 않았는지? • 회사의 사정으로 선작업을 지시하고 계약은 사후에 체결하면서 대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한 후 일률적으로 지급함에 따라 상당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에게 작업 진척도에 비해 기성에 따른 정산 금액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지급을 위한 절차를 지연시키지는 않았는가? • 정당한 이유없이 대금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물품 및 시설의 검사나 인수를 지연하는 행위	
□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지는 않았는지? • 납품물량별로 납품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종납품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요건을 불리하게 가중시키는 행위 등 • 납품물량에 따라 납품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최종납품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 계약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협의형식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 당초 계약시의 하자이행기간과 금액을 협의형식으로 부당하게 연장하거나 증액시키는 경우 • 거래상대방에게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각서를 일률적으로 징구하는 경우 • 계약금액 조정의 불인정 등의 내용을 협의형식으로 거래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	

□ **계약완료단계**

체크 항목	V
□ 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환수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가? • 계약완료후에 자체감사에서 비용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지적을 이유로 이를 강제로 환수하는 행위 등	
□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 하자이행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행위 • 하자이행의무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도 부당하게 하자이행의무를 강요하는 행위 • 당초 약정한 하자이행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이유를 들어 사실상 무제한의 하자이행을 강요하는 행위	
□ 계약 종료시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거부하였는지? • 회사의 계획변경이나 예산사정등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면서 거래상대방이 그동안 투입한 작업비용 등을 보상해 주지 아니하는 행위	

Ⅴ. 고객, 임차인, 협력업체에 대한 약관법 준수

[회사의 공정거래 리스크]

□ 회사의 경우 상업시설 임대차 계약서상, ①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조항, ②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 의무 조항, ③ 보험가입강제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협력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예: 사업자의 면책조항, 고객에의 위험전가 조항)하여서는 안된다.
□ 「약관법」은 「민법」의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약(개별약정)에 의하지 않는 한 반드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의 약관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임차인에게 명도 지연 또는 거부시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일방적이고 추상적인 사유를 이유로 시설물의 이전·변경·수리 의무화 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 영업인에게 보험가입을 강제하는 규정을 권고사항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 「약관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약관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약관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고객의 이익은 계약당사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집단의 평균적이고 전형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 재판관할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지방소재 업체는 재산권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법원으로도 제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보다 위약금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계약의 해지는 해지절차에 따라 해지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에도 사업자가 고객에게 해지를 통지한 때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조항을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통상적인 약관의 테두리를 벗어나 의외조항을 삽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른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약관법의 이해

□ 약관의 개념

- ㅇ "약관"이라 함은 명칭이나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 계약의 표준화·정형화를 통해 대량의 거래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ㅇ 그러나 약관은 고객에 대하여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면책조항, 채무의 이행, 계약의 해지 등에 있어서 부당하거나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약관법」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며, 「약관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의 심사·심의·의결대상이 된다.

[Tip] 약관의 주요 특징

□ 약관은 일방당사자(사업자)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어야 하고, 다수의 상대방(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일반성). "다수"는 약관의 집단적, 반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거래의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고, 특정 다수, 불특정 다수를 불문한다.

□ 약관은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한다.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개별적인 교섭(흥정)없이 일률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손으로 쓴 것도 약관(수기약관)에 해당되나 구술로만 계약한 것은 약관이 아니다.

□ 약관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사업자와 고객사이에 이미 체결되었거나 장래 체결될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한다. ○○약관, 계약서, 약정서, 규정, 규약, 규칙, 회칙, 특별약관, 특약조항, 부가약관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서 가운데 포함되어 있거나 별지로 되어 있거나 영업소나 출입구에 게시되거나 상관이 없으며, 약관이 소위 유일조항인지 다수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묻지 아니한다.

□ 약관은 개별적인 교섭을 거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고객이 자신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이익 조정의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개별약정으로 약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약관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을 거쳤다 하더라도 교섭을 거치지 않은 나머지 조항들은 여전히 약관으로 남게 된다.

□ **약관의 유형**

약관인 경우	약관이 아닌 경우
□ 점포임대차 계약서 □ 운송약관 □ 분양·임대차계약서 □ 대리점계약서 □ 가맹점계약서 □ 용역경비계약서 □ 주차장이용약관 □ 인터넷서비스약관	□ 부동산 분양가격, 입회금, 이용료, 수수료, 이익·로열티 배분비율 등 각종 재화와 용역의 가격조항 그 자체 □ 아파트·상가 등의 공동규약 □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 회사의 정관 등 단체의 내부 구성원간의 규율조항 □ 계약서에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가 계약당사자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기재한 위약금 등에 관한 조항

□ **약관의 규제**

ㅇ 「약관법」상 약관의 규제는 편입통제, 해석통제, 불공정성 통제로 나뉜다.

- 편입통제는 첫 번째 단계로 약관이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으로 인정될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약관에 대한 설명, 명시, 교부의 의무와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편입통제가 인정되면 해석통제를 거치게 된다.
- 해석통제는 약관조항을 여러 해석원칙에 따라 해석하고 당해 계약에 적용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객관적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다.
- 불공정성 통제는 편입통제와 해석통제 단계에서 모두 문제가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내용통제를 거치게 된다. 이는 약관 조항의 내용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는 가를 심사하여 효력유무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를 구체화한 「약관법」 제6조~제14조가 적용된다.

2. 약관의 불공정성(위법성) 판단기준

□ **일반원칙**

ㅇ 약관은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므로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 의무가 확대되며,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형량을 통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제1항).

□ **불공정성 추정**

ㅇ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독소조항), (2) 거래형태 등을 고려할 때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외조항), (3)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약관법」 제6조 제2항).

□ **불공정 약관의 효과**

ㅇ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에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

3. 약관법의 주요 규제 내용

ㅇ 「약관법」은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고객측에서는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약관 중에 유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계약이 거래계에서 담당하는 사실상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편입요건의 강화로 계약의 편입을 무더기로 부인하면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 및 약관규제의 중점이 약관의 명시에서 불공정조항의 무효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관의 편입요건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제안만으로 족한 것으로 규정한다.

ㅇ 즉, 약관은 일단 사업자의 제안만 있으면 개별약관에 편입되어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며,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고객의 항변에 의해 계약내용으로 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ㅇ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① 대상

ㅇ 설명의무의 대상은 '중요한 내용'에 한하므로 중요한 내용이 아닌 약관내용에 대하여는 설명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으며, 특히 '중요한 내용'인가의 판단기준은 고객의 이해관계 관련성에 따라 판단 한다.

ㅇ 법원은 '중요한 내용'의 판단기준으로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ㅇ 내용상으로는 계약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 의무가 제대로 이행 되었더라도 그것이 계약의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② 위반의 효과

ㅇ 사업자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약관법」 제3조 제3항). 즉, 명시되지 않거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지 않은 약관조항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지 아니한다.

-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명시·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당해 계약은 무효이다.
-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불공정약관조항

-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는 일반원칙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조항을 무효로 선언하는 일반규정이고,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부터 「약관법」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개별금지규정이다.
- 약관조항의 위법성을 심사할 때 1차적으로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부터 제14조(소제기의 금지등)에 열거된 개별금지규정을 적용하고, 2차적으로 제6조(일반원칙)를 적용한다.

유형	세부유형
(1)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① 신의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③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④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2) 개별금지조항 위반	① 면책조항의 금지
	② 손해배상액 예정
	③ 계약해제·해지권 제한
	④ 채무의 이행
	⑤ 고객의 권익보호
	⑥ 의사표시의 의제
	⑦ 대리인의 책임가중
	⑧ 소송상 권리의 제한

①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위반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언제나 무효이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약관이 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공정을 잃은"이라 함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 사이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을 말하며, 그 판단기준은 사업자의 이익과 고객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한다.

[Tip] 불공정한 약관 유형

□ 공정성을 잃은 조항
□ 고객에게 귀속할 물건을 사업자의 소유로 정하는 조항
□ 쌍방간의 계약에서 회사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② 개별금지조항 위반

(가) 면책조항의 금지

- 면책조항이란 현재 또는 장래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자가 법규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원인과 범위에 대하여 유리한 법적 취급을 받을 것을 정한 약관조항을 말한다(「약관법」 제7조).
-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갈 자(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약관에 의하여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며, 법률상 책임이란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 책임, 불법행위 책임도 포함된다.

[Tip] 불공정한 약관 유형

□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한국공항공사의 임차인의 권리 등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2005-013호)]

[약관조항]

1. 임대보증반환청구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금지 조항

제7조(임대보증금) ⑤을은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공정위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

2.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 배제조항

□ 제8조(임대보증금의 반환)
갑은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목적물을 명도한 날로부터 14일이 내에 임대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한다.

(공정위 판단)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

3. 유익비상황 및 부속물매수 청구권 제한 조항

제9조(시설의 설치 및 변경) ②제1항에 의해 설치한 시설물은 모두 "을"의 고유한 영업을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며, "을"은 "갑"에게 유익비상환 또는 부속물매수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공정위 판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

4.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는 조항

제17조(안전 및 화재예방) ⑧을은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화재 등으로 인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②을은 시설물 설치, 영업장 관리, 안전관리, 소방관리, 기타 제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경우 이를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공정위 판단)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

5. 보험 가입 강제 조항

제10조(보험의 가입) ①을은 임차한 재산에 대하여 갑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 )원 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위 판단)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해당

6.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조항

제28조 및 제24조(관할 법원) 본 계약서에 기재한 재산 사용에 있어 분쟁이 있을 경우의 관할 법원은 "갑"의 본사 소재지 또는 지사 소재지 관할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공정위 판단) 피심인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약 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호,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하였다.

(나)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8조).
- 본 조에 의해 무효로 되는 부분은 적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지 않고 그러한 약관조항 자체를 무효로 하므로 마치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이 때에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원칙에 의해 배상액이 결정된다.

[Tip] 불공정한 약관 유형

□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정한 조항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 2008-071호)]

[약관조항]

피심인(용산관광버스터미날)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조항 중 임대차계약서 제10조(입점지체 및 위약금) (2) "을"은 제(1)항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없으며 이때에 "갑"은 위약금으로 보증금의 10%의 금액과 기타 임대료 및 제비용을 공제한 후 제29조(임대보증금 반환)에 의거 나머지를 반환한다는 입점지체시 계약해제 및 위약금조항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물 사용에 대한 대가는 계약기간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임대료를 합산한 금액, 즉 임대료 총액이라 할 것이고,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은 임대료총액의10% 정도로 하는 것이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른 적정수준이라 할 것임에도 동 약관조항은 임대료총액이 아닌 임대보증금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그 10%를 위약금으로 하고 있어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판단하였다.

(다) 계약의 해제·해지권 제한

-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계약의 본질적 사항임에도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 「민법」이나 기타 법률이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는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을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
- 법정해제권 또는 법정해지권을 대상으로 하므로 약정해제권 또는 약정해지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Tip] 불공정한 약관 유형

□ 회사의 채무불이행시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
□ 1회라도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한다는 조항
□ 회원가입시 납입한 입회비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공급선수협약서 및 상업용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1997-138호)]

[약관조항]

<택지공급협약서>

제11조(협약의 해제) ④갑이 제1항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을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에서 제3항에 의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을에게 반환하며, 이 경우 갑이 을에게 반환하는 금액에는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상업용지공급계약서>

제12조(계약의 해제) ②갑은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불입한 분양가격, 연체료의 납부금에서 위약금, 원상복구비 등 체납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반환한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그에 따라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는 것이 민법 제548조의 내용일 뿐

아니라 계약해제시의 기본법리라고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반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부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의 해제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 법 제9조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2011-042호)]

[약관조항]

<임대계약서>

제11조[임대계약의 해지 및 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임대계약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다.

1. "갑"의 사업에 필요한 때

3. "갑"이 자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갑"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그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때

<이행각서>

만약 계약조건을 위배할 경우에는 귀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귀 철도공사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기에 이를 공증하여 각서합니다. 본 이행각서는 임대계약 갱신시에도 유효합니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계약의 해지·해제권 행사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임대계약서 제11조 제1호 및 제3호 약관조항은 임대인이 언제든지 임대계약을 해지·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관조항으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약관법 제9조 제2호 및 제9조 제3호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 금지 관련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과중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이를 수인하거나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바, 이 이행각서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5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라) 채무의 이행

-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합의 및 판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약관법」 제10조).
- 급부는 사업자 자신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와 고객이 제공하여야 할 급부를 모두 포함한다. 급부의 변경에는 약속한 급부의 수량, 성질, 이행시기나 이행장소의 변경, 급부제공의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
-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약관을 설정한 의도 및 목적,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고객과의 협의가능성, 일방적인 변경가능성, 사업자의 영업상의 필요 및 고객이 입을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Tip] 불공정한 약관 유형

□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규정하지 않고, 임대인에게만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계약의 중요사항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할 우려가 있는 조항
□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시 일방적으로 전기 등 공급을 중단하거나, 점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채권자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 공급을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통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면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인천국제공항의 영업보증금 및 영업료의 차임 감액청구권 배제조항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2005-012호)]

[약관조항]

<상업시설계약특수조건>

제20조(계약의 일부 변경) ① 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를 수락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기타 공항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장, 영업시설물 및 주변환경의 변화, 정부정책의 변경, 물가 등 경제적 여건 및 여객수요의 변동 등 계약체결과 다른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영업보증금과 사용료 등에 대한 감액 및 영업요율에 대한 인하를 요청할 수 없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피심인의 상업시설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은 영업장 면적, 취급업종, 종목(물품 및 서비스)의 변경 및 삭제, 적용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 등 피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될 계약내용에 대하여 임차인은 무조건적으로 수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기타 공항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같이 그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피심인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 계약내용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0조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마) 고객의 권익보호

ㅇ 고객이 직접 계약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법률의 규정 등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익을 사업자가 약관으로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상당한 이유없이 권리 및 이익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약관법」 제11조)

[Tip] 불공정한 약관 유형

□ 채무불이행시 해당업체 정보를 본인의 동의나 최고없이 관련 협회에 임의로 제공하는 조항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사업자의 민·형사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
□ 채무의 일부라도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조항
□ 포괄적이고 자의적으로 규정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조항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계약서 및 이행각서상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건 (시정권고 제2011-042호)]

[약관조항]

<이행각서>

만약 계약조건을 위배할 경우에는 귀 한국철도공사의 임대차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 등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귀 철도공사에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기에 이를 공증하여 각서한. 본 이행각서는 임대계약 갱신시에도 유효하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 금지 관련하여,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해지나 과중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임차인이 이를 수인하거나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바, 이 이행각서 조항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9조 제5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인천국제공항의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 배제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2005-012호)]

[약관조항]

<상업시설계약특수조건>

제4조(영업보증금) ③공사는 정상적인 계약기간의 종료되면 그 종료일(원상회복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원금만을 반환한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 의무와 임대인의 영업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민법 제536조), 현행 약관조항은 임대차물건을 명도한 후 60일 이내에 계약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영업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바) 의사표시의 의제

ㅇ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효과의사)를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는 행위(표시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의제하거나 의사표시의 도달을 의제하는 것은 고객에 대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이를 규제하려는 취지이다(「약관법」 제12조).

[Tip] 불공정한 약관 유형

□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고객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상 규정이나 거래관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도달 여부를 불문하고 발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통상의 경우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경과한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비록 고객 주소가 바뀌었더라도 기존 계약서상의 주소로 통지를 하였다면 사업자의 과실을 불문하고 유효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
□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의 도달의 의제 등에 관하여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의사표시기간의 부당한 장기화 등을 금하는 조항
□ 고객의 채무불이행 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회수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고객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 고객이 채무불이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고객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유형·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조항
□ 사업자가 의사표시에 관하여 발신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하거나 연착이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고객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인천국제공항의 발송주의를 채택하는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2005-012호)]

[약관조항]

<상업시설계약특수조건>
제5조(통지) ②통지에 대한 효력은 공사의 문서접수부서에 유효하게 접수되었을 때 발생하며, 공사의 계약자에 대한 통지사항은 영업장내 계약자의 종업원에게 전달하거나 계약자의 주소지로 우편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하거나 FAX로 계약자에 발송한 후 수신을 확인함으로써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민법 제111조)임에도, 우편발송 후 3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관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12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사) 대리인의 책임 가중

ㅇ 대리인의 의해 체결된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대리인이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이다,

(아) 소송상 권리(소제기의 금지 등)의 제한

- 민·형사상의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불소제기의 조항이 무효로 되는 이유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고객의 권리구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이다.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란 법정관할 외에 1개 또는 수 개의 법원을 부가하는 부가적 합의와 특정의 법원에만 관할권을 인정하고 그 밖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관할 모두를 말한다. 따라서 부당하게 고객의 편의를 희생하여 재판관할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 사업자가 약관에 고객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부제소합의, 관할의 합의, 입증책임의 전환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은 무효이다.

[Tip] 불공정한 약관 유형

□ 계약당사자간의 귀책사유를 따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유로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을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 또는 사업자가 지정한 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외국사업자의 본사 소재지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는 조항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

[인천국제공항의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에 대한 건(시정권고 제2005-012호)]

[약관조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며, 계약당사자들이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합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분쟁의 해결) ③일반조건 제51조제2항에 의한 민사소송의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하며, 민사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6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통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본 조에 의한 소제기 기한을 도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18조 제3항에 의한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이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상업시설계약특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결한다.
1. 공항공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

[공정위 판단]

공정위는 분쟁발생을 예상하여 재판관할을 당사자간의 특약 또는 개별약정으로 정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자와 고객간의 거래에 이용되는 약관에서 사업자 갑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 초래가 있다 할 것임에도, 현행 약관조항은 피심인의 주소지를 소송 관할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 대하여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조항으로 약관법 제1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4. 위반시 제재

□ **시정조치**

- ㅇ 사업자는 「약관법」 제6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약관법」 제17조의2).
- ㅇ 위반한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사업자에게 당해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일반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우월적 지위가 현저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그로 인하여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성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시정조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다수 고객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 ㅇ 시정조치 권고 및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공정위는 필요 시 당해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 **약관의 심사청구**

- ㅇ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이 법 위반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위에 청구 가능하다(「약관법」 제19조).

□ **과태료**

- ㅇ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약관법」 제34조).
- ㅇ 표준약관표지 부정사용자, 공정위 조사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약관법」 제34조 제1항)
- ㅇ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표시의무 위반자는 오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약관법」 제34조 제3항).

□ **형사적 제재**

- ㅇ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약관법」 제32조).
- ㅇ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에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약관법」 제33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다(「약관법」 제33조 단서 조항).

5. 업무시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

□ 약관 교부시

체크 항목	V
□ 고객과 계약체결에 있어서 약관의 내용을 약관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영업장 비치, 홈페이지게시, 직접전달 등)으로 명시하는가?	
□ 고객이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기를 기피하거나 미제공 하였는가	
□ 고객에게 임대차 거래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가?	
□ 고객에게 약관 변경에 대해 고지하거나 안내하는가?	
□ 고객과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개별약정보다 우선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가?	
□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가?	

□ 약관의 해석

체크 항목	V
□ 고객과 약관의 내용과 다른 개별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개별약정보다 우선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가?	
□ 약관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가?	
□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인데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행위가 있는가?	

Ⅵ.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준수

[회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리스크]

□ 회사의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며, 회사의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일정 이상의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의 대가성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처벌될 수 있다.
□ 따라서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00만원 이하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

1. 청탁금지법의 이해

□ 의의

ㅇ 기존 「형법」의 적용상 한계를 보완한 포괄적 부패방지법령으로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외에도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기관 임직원 등은 일정수준 이상의 금품을 제공 받은 것만으로도 뇌물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다.

ㅇ 「형법」상 뇌물죄에 따라 처벌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에 대해 직무관련성, 대가성의 요건이 필요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라 함)에 따르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과 관계없이 회당 100만원 또는 연간 누적으로 30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지급거나 지급 받은 경우 처벌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지급액의 2~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ㅇ 「청탁금지법」의 입안은 2011년 6월,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전 대법관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이법안은 이듬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하였고, 2년 7개월 만인 2015년 3월 27일 제정되었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주요특징

ㅇ 「청탁금지법」은 「형법」이나 「공직자 윤리법」 등 기존의 부패방지 법령으로 통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종합적인 통제장치로 해당 법은 기존 형법과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Tip] 기존 형법과의 비교

구분	형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범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공무원에 준해서 처벌)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기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까지 범위 확대
처벌요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존재해야 형사적 제재 가능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불문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하면 형사적 제재 가능
양벌규정	양벌 규정 없음	양벌규정 있음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제재 가능

① 공직자의 범위 확대

ㅇ 「청탁금지법」에서 획기적인 것은 종전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청렴과 투명성의 의무를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 임직원, 언론기관 임직원, 배우자에게까지 부과한다는 것이다.

② 처벌요건

ㅇ 기존 형법상 뇌물은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 곤란할 때는 처벌이 불가능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때 처벌할 수 있다.

③ 양벌 규정

ㅇ 양벌 규정에 따라 회사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 받을 수 있다. 단,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및 교육을 통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입증할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2. 적용대상 및 범위

□ **적용대상**

① 공직자 등

ㅇ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이 있으며, 국회의원과 같이 선거로 취임한 공무원도 포함된다.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법의 적용을 받는데, 사법연수원 연수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을 예로들 수 있다.
- 공무원 신분인 경우 수행하는 직무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모두 법의 적용을 받는다.
- 단,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행정기관에 근무하기는 하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ㅇ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은 상임과 비상임을 포함하고, 근로계약 형태 및 수행직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체결한 자는 법 적용대상자이다. 단,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와 용역(도급)을 체결한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경비, 환경미화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ㅇ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이 해당되며, 보도·취재 외에 행정, 단순 노무 등에 종사하는 자도 법 적용대상이 된다.
- 단, 사보를 발행하는 기업의 경우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이다.
- 예를 들어,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기자 등 언론사와 용역(도급)을 체결한 단체나 개인은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② 공직자 등의 배우자

ㅇ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적용대상이 되는데,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③ 공무수행사인

ㅇ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ㅇ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ㅇ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ㅇ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 산재보험의료기관 평가 등)

□ **장소적 적용범위**

① 속지주의

ㅇ「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위반행위를 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② 속인주의

ㅇ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해외지사에 나가 있는 임직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공직자등에게 금품제공이나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될 경우 국내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받으므로 해외에 나가 있는 임직원들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위반시 제재

□ **금품 등 제공**

ㅇ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ㅇ 다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금품가액의 2배~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ㅇ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ㅇ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정한 청탁의 경우**

ㅇ 법적용 대상자들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ㅇ 부정청탁의 경우 그 대가로 금전 등 제공이 없더라도 처벌 된다.

-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한 공직자 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

ㅇ 양벌규정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도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업무시 유의사항

□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① 적용기준(대가성 불문)

ㅇ「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 등 수수금지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성 없이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 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100만원 이하 금품이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ㅇ 또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공직자 등이 처벌을 받게 된다.

-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으며,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Tip] 직무관련성

□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형법]상 뇌물죄의 직무관련성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즉, '공직자 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한다.

□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무행위 또는 관례상·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②'금품 등'의 종류

ㅇ「청탁금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품 등'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제공 및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③ 가액 산정의 기준

(가) 일반적 기준

ㅇ 금품 등의 가액은 제제의 종류(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구분 하는 기준 및 과태료 부과액 산정을 위한 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ㅇ 행위시(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ㅇ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으며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상이한 가격자료가 있는 경우 신빙성이 담보되는 객관적, 합리적인 자료가 우선하되, 이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나) 개별적 기준

ㅇ 납품·용역 기회의 경우, 납품가액에서 원가를 공제한 이익 또는 실제 수수 용역대금에서 정당한 용역가액을 공제한 이익으로 판단한다.

ㅇ 향응은 당사자가 함께 향응을 한 경우 실제 각자에게 소비된 비용, 그 비용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직자가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향응(접대)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접대비용과 공직자의 접대비용을 합산하게 된다.

ㅇ 금전 차용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차용한 경우 수수한 금품 등은 금융이익 상당액(금융기관 대출이율 또는 법정이율)이고, 현저히 저리로 차용한 경우는 대출이율이나 법정이율과 약정이율의 차액 상당액이다.

④ 취업제공의 경우

ㅇ 의미

-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직책 여부 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업무처리, 조언•자문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이다.

ㅇ 대상

- 공직자등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배우자에게 취업제공을 금지한다.

ㅇ 가액산정기준

- 법령 기준상 겸직 허용 여부, 취업 경위, 실제 근무 형태, 약정 급여액, 위반행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당한 취업제공인 경우에는 취업제공 및 그에 따라 수령한 급여 등은 모두 예외 사유인 정당한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나, 정당한 취업제공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취업제공 그 자체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된다. 다만, 취업제공이 금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 방편에 불과한 경우 수령하기로 하였거나 수령한 급여가 수수한 금품 등에 해당된다.

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ㅇ「청탁금지법」에서는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다. 다만, 다른 법령, 특히 형법의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사유 성립이 가능하다. 8가지 예외사유는 다음과 같다.

(ㄱ)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ㄷ)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ㄹ)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ㅁ)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ㅂ)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ㅅ)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ㅇ)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⑥ 사교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ㅇ 목적 요건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예외사유에 해당하며, 가액 기준을 초과하여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에는 수수한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된다.

(가) 목적 요건

ㅇ 원활한 직무수행등의 목적상 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가액 범위내라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자나 불이익 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 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등을 말한다.

(나) 가액기준(한도)

ㅇ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5만원 이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이다, 다만,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지 않고 제공자가 특정 식당에서 먼저 또는 나중에 결제하고 공직자등만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액한도 내라도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없다.
-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은 5만원 이하이고,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가능하다.
- 선물 : 일체의 물품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단,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 제공 불가) 다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인 경우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ㅇ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고, 가액한도는 5만원이며 각각의 금품 등의 종류별 가액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⑦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ㅇ 권원(權原)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 정당한 권원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증여 외에도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등도 정당성 여부를 고려하여 정당한 권원에서 제외 가능하다.

⑧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

ㅇ "공식적인 행사"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에 한정,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의 기관에서 주최하여 열리는 행사를 말함. 특히 주최자와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공개성(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공개 여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사후 공개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주최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개성이 있다고 판단),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 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ㅇ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같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등을 의미한다. 특히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 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ㅇ "일률적"으로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참석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하다.

□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의 금지**

ㅇ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상 열거된 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즉, 부정청탁의 주체는 전 국민(누구든지)이 될 수 있고,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된다.

ㅇ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의 범위는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이외에 결재선상에 있는 과·국장, 지휘감독권이 있는 기관장까지 포함된다.

① 부정청탁

ㅇ「청탁금지법」상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련 공무원, 발주처 담당자 등에게 법령 및 관련 절차를 위반한 모든 형태의 부정한 청탁을 할 수 없다.

② 직접 청탁 제외 사유

ㅇ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하는 부정청탁이 금지되고, 제3자를 위하거나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만 제재대상이 된다.

ㅇ 본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외 : 청탁행위의 직접적 법률적 효과가자신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제3자의 명시적인 부탁이 없음에도 본인이아닌 제3자를 위하여 직접 청탁을 한 경우에는 제재대상이 된다.

③ 부정청탁금지 행위 유형

ㅇ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말한다.

① 인가 허가 등의 업무처리
②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 면제
③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 탈락에 개입
④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 • 탈락에 개입
⑤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⑥ 특정인 계약 선정 탈락에 개입
⑦ 보조금 등의 배정 • 지원 투자 등에 개입
⑧ 공공기관이 생산 •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⑨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 • 판정 업무에 개입
⑩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조작 위법사항 묵인
⑪ 사건의 수사 재판 등 개입
⑫ 상기 유형에 대한 지위 권한 남용
⑬ 부정청탁금지 행위 유형에서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12번은 보완적 보충적 지위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④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ㅇ「청탁금지법」은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방지를 위해 7가지 예외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 행위 요구
②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
④ 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⑤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⑥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FAQ(사례)

Q. 요구 자체를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부당청탁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지?

A. ‘공개적인 요구’라는 의미는 물리적·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 청탁의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개된 장소에서의 1인 시위나 언론매체 또는 공식적인 간담회 등을 통한 요구는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Q. 부정한 청탁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청탁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지?

A.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내용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행위 그 자체를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자는 제재 대상이 된다.

Q. 「청탁금지법」상 ‘동일인’의 의미는?

A. 동일인은 금품의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금품 등 제공의 경우 출처가 중요하므로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될 수 있다.

Q. 「청탁금지법」상 ‘1회’의 의미

A. 1회는 법적인 의미의 행위 수를 고려하면 되는데,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가능하다. 특히, 분할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는 소위 쪼개기의 경우 법적 평가 시에는 1회로 볼 수 있다.

Q. 「청탁금지법」상 ‘회계연도’의 의미는?

A. 회계연도는 수수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Q.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K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함께 이수하여 알게 된 공공기관의 국장 ‘C’를 별다른 용건이 없는데도 자주 만나 식사나 골프 등을 함께 하며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였는데, 그 접대 금액의 총액이 연간 500만 원 가량에 이른다면 이는 부정 금품 제공, 수수에 해당하는가?

A. 식사나 골프 등의 향응·접대는 모두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금품 등’에 해당하므로, ‘C’는 동일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것에 해당하여 동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고, ‘B’는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는 동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식회사는 동법 제24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다.

Q. 중학교 동창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친구의 남편이 내가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친구에게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 합계 1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제공하였는데 괜찮은지?

A. 공무원에게 직접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한 경우라도, 제3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이 공무원에 대한 제공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뇌물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서도 명목과 무관하게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1회 1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Q.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추석인사로 2만8천 원 상당의 떡을 선물하는 경우는 가능한지?

A.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해 허용되어 왔고, 김영란법 시행령에도 가액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약소한 선물이라도 뇌물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전화나 이메일로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록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최종공포일 : 2022.10.3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따라야 할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과 공정거래와 관련된 모든 업무 활동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말한다.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라고 한다)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에 대한 행동기준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내부 준법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4. '자율준수관리자'란 CP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수행을 보조하고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CP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유관부서'란 주관부서가 CP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감사담당부서, 인사담당부서 등을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4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① 사장은 회사의 CP 구축 및 효율적 CP 운영을 위해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주관부서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임자가 당연직으로 자동 승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장이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1. 주관부서장이 공석인 경우
2. 주관부서장의 업무와 자율준수관리자로서의 직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

제5조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 대한 조사 요청 권한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권한
3. 자율준수관리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출요구 권한 및 예산편성요구 권한
4.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6조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총괄
2. 자율준수 관련 교육 총괄
3. 자율준수 관련 모니터링 총괄
4. 자율준수편람 관련 총괄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한 대응조치 요구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유관부서 통지
7. 기타 CP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주관부서의 직무)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를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2. 자율준수 관련 교육 시행
3. 자율준수 관련 모니터링 절차 운영
4. 자율준수편람 제작 및 배포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안에 대한 대응조치 요구사항 진행 확인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유관부서 절차 진행 요청
7. 기타 CP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 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회사의 지원)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 (임직원의 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

율준수관리자에게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인지한 직원은 신속하게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CP의 운영

제11조(자율준수의지 선언)

① 사장은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의지를 선언한다.
② 자율준수의지는 문서로 표명되어 회사의 임직원과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한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12조(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이하 '자율준수편람'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게시·배포 등을 통해 전직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관계 법령 등의 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내용을 신속하게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 (교육 프로그램)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공정거래 관련 법령 저촉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자율준수편람에 관한 교육
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내용, 위반 사례 등에 관한 교육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수 실적을 내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 (모니터링 제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1회 이상 CP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생 등 필요 시 사장에게 보고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는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15조 (CP 효과성 평가)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점검,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문서 관리)

① CP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하에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관한 업무 수행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보관되어야 한다.
③ 주요 관리대상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장의 자율준수의지 선언문
2.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3. 내부 감독 활동 관련 문서
4.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관련 문서
5. 자율준수 교육 관련 문서

6.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제출한 자료

④ 문서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문서규정」, 「문서업무절차」 및 「전자문서업무절차」에 따른다.

제4장 제재조치 및 포상

제17조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관부서에 이를 통지하여 징계 등 제재조치 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부서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등 제재조치를 진행할 경우, 그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을 사유로 징계 절차가 진행중인 임직원에 대해 관련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포상)

자율준수관리자는 CP를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9조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록2] 공정거래 관련 법령 리스트

□ 공정거래법

구분	법령명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지침	계속적 재판매거래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심사기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공동행위심사기준
	사업자단체활동지침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재신고사건 처리지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등의 공개에 관한 지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환급업무 처리기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법령 등의 경쟁제한사항 심사지침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 하도급법

구분	법령명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지침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기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부당특약 심사지침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 약관법

구분	법령명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지침	약관심사자문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약관심사지침
	표준약관표지의 사용에 관한 고시

□ 표시·광고법

구분	법령명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지침	금융상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비교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수상·인증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인터넷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운영지침
	정정광고에 관한 운영지침
	주된 표시·광고에 딸린 제한사항의 효과적 전달에 관한 가이드라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운영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소비자기본법**

구분	법령명
법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고시·지침	광역지방자치단체 소비생활센터 운영지침
	단체소송 제기가능 경제단체 지정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사업 업무 운영지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규정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관련 고시
	소비자종합정보망(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
	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